



제 3 장

노동사목위원회의 성장

(1980 ~ 1987년)



✻ 제1절 민주화에 대한 열망

1. 정치적 상황

유신독재가 몰락하자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살아났다. 그러나 신군부가 12·12사태로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강행하여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와 모든 정치활동금지, 국회 기능정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정치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권찬탈 야욕을 노골화하는 동시에 5·18민주항쟁을 유발하였다.

전두환 일파는 1980년 9월에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3일에 국민투표를 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을 발효시켰다. 새 헌법의 부칙에 따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5개월 만에 처리된 헌법부속법률과 189건의 법률안¹⁾이 기본권을 억압하였다. 1981년 1월 25일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전두환이 2월 25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85년 2월 12일의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중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3개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훨씬 능가하고, 1980년 쿠데타의 군부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민한당·국민당이 참패한 반면, 신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선거혁명은 전두환정권을 심판한 동시에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1985년에 학생들이 ‘전국학생총연합’을 결성하고 연합체를 정비하였는데, 반제·반군부·독재투쟁의 종합으로 군부독재정권을 퇴진시키고, 광주사태를 방조하고 전두환정권을 지원한 미국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1985년 5월에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투쟁을 벌였다. 광주민주항쟁 이후 1985년까지 반미운동은 대내적 민주화운동에 종속되는 것으로 전두환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나 중립적 태도를 요구하였으나, 그 이후 반제투쟁으로 전환되면서 5·3인천사태로 급반전되었다.²⁾

1980년대에 도입된 고교내신제, 과열된 입시경쟁과 사학재단 비리 등으로 교육계의 위기감

1)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현재는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된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및 사회안전법 등이 그것이다.

2) 박노영, 부산, 서울, 광주의 미문화원방화 점거사건,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동아일보사, 1988, 290~291쪽 참조.

이 고조되면서 일선교사들이 직접 교육문제를 제기하고자 『민중교육 1호』를 제작하였다. 정부는 관련교사들을 파면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1986년 5월 10일에 교사들이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사의 교육권과 시민적 권리 보장, 교육행정의 비민주성과 관료성 배제, 자주적 교원단체설립과 활동보장과 보충·심야학습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이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2. 1980년대 경제상황

1) 거시적 안정과 자율화 추구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은 과도한 정부주도형 경제운동을 강제하여 정부지원 확대로 통화가 팽창되고 인플레이가 심해져 수출경쟁력이 약해졌으며, 국제수지 적자누적과 실질 금리 하락으로 저축감퇴와 부동산투기가 성행하여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해졌다. 독재정권에서도 경제문제, 특히 물가안정의 필요성은 국민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여 10·26사태와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었지만, 1982~1983년에 경제안정화시책을 수행하였다.³⁾

1986~1988년의 ‘3저호황’은 1980년대 초반의 수출부진, 외채위기 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부문을 주력산업으로 연 12%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수출호조와 수입억제 결과, 경상수지는 1986년에 사상 최초로 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후 3년 동안 흑자폭이 계속 확대되었다.

1985년의 국민총생산 831억 달러, 1인당 국민총생산 2,032달러, 실업률은 4.0%이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집약형 산업육성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중화학공업으로 수출주도부문을 전환했던 정책을 이 시기에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개편하였으나, 주도부문 위주의 수출을 위한 선별지원은 불균형성장 방식과 중앙집권적 관리경제라는 한국경제운용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다.

1980년대 말 국가 GNP 규모로 볼 때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은 10~15위권 정도로

3) 이종원, 한국경제론, 을곡출판사, 2002, 202~203쪽.

관목할 만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부 주도부문의 성과로 여타부문과 불균형 내지 이중성이 극대화된 대가로 얻어진 것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혜, 문화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훨씬 못 미쳤다. 농어촌의 황폐화나 중소기업의 열악성,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도시인구의 30%를 접하는 빈곤층은 이런 특성을 잘 대변해 주었다.⁴⁾

2) 노동시장의 성장과 구조변화

1970년에 약 1,000만 명 정도이었던 취업자가 1985년에 1,500만 명으로 50% 정도 증가하고, 피고용자는 38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피고용자 고용률도 38.9%에서 54.2%로 높아졌다. 1차 산업 취업자는 1975년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신 2·3차 산업 취업자가 늘어났다. 특히 2차 산업 취업자는 15년 동안 2.6배 이상 늘어나 다른 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고용확대와 고용성장정책의 희생양이었던 노동시장도 비로소 변하였다⁵⁾. 정부가 중화학공업화에 필수적인 기능인력양성에 노력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만큼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없어 1975년을 전후하여 일부인력이 부족해졌다. 1975~1986년에 고용증가율이 3.5%로 1963~1975년의 11.5%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1970년 이후 1986년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80년대 미국 초국적기업의 아시아진출이 강화되면서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기술부문, 한국 등 아시아신흥산업국가들(NICs)은 중위부문, 아세안(ASEAN)과 주변은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부문으로 특화하였다. 국제분업구조재편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1980년대 한국경제를 지배하였는데, 불황산업과 사양산업 퇴출, 첨단산업 도입이라는 협의의 구조조정을 포함하면서도 기존 성장산업의 내포적 합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핵심으로 하였다.

고용문제는 고용규모라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임시고·일고·파트타임의 증가로 인한 질 저하와 구조적인 고용불안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1988년까지 감소하던 일용직노동자가 1989년에 증가하여 1989년 7월에 전체 노동자의 17.3%(180만 명)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 증가하던 고용안정률이 1988년 7월 85.1%에서 1989년 7월에 82.7%로 급락하였다. 부동산 투기는 물가상승과 함께 본격화하여 1986년부터 1990년 9월까지 땅값 141.2%, 집값 58.8%,

4) 같은 책, 204쪽.

5) 같은 책, 314~315쪽.

전세값 99.7% 등으로 상승하였다.

1980년대는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안정성장을 추구하고, 중화학공업에 기반을 두되 수출주도부문을 연구개발산업부문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구되었다. 폐쇄적인 관주도의 정부정책도 민간주도형, 대외개방형으로 전환하였으며 과학기술, 인력개발에 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첨단기술과 기능인력을 확충하면서도 열악한 중소기업노동자나 단순생산직인력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노조활동만 억제하였으며, 노동시장도 임금과 노동환경의 격차가 커졌다.

한편,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비교적 대등해진 노사교섭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였다. 적용대상은 1988년에 도입할 때부터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었으나, 처음엔 제조업에만 국한하였고 1989년에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3D업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급감하여 단순기능인력 부족이 본격화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력이 유입되었다.

3. 1980년대 노동운동

1979년 10월 유신독재체제의 붕괴 이후 신군부정권은 신규조직을 금지하고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조간부를 포함한 191명을 강제 사퇴시키고 105개의 지역지부를 해산하였다. 또한 민주노조간부들을 수사하고 순화교육을 보냈으며, 청계피복,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터, 서통 등 민주노조들을 폭력으로 파괴하고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악하였다.⁶⁾

1984년 이후 유화국면으로 정세가 변하자, 노동자들이 신규노조 결성과 어용노조민주화투쟁을 벌이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이 ‘블랙 리스트 철폐투쟁’, ‘1984년 9~10월의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투쟁’, 1984년 이후의 노동법 개정운동과 ‘위장취업자의 해고무효 확인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이 자주적인 운동단체들을 만들어 투쟁하였으며, 노동현장에 투신한 지식인노동자들은 노조결성과 어용노조 민주화를 위한 투

6) 1980년 12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개악한 노동법 주요내용은 기업별 노조의 강제, 복수노조 금지조항 강화, 제3자개입금지조항 신설, 유니온숍 조항 폐지, 노조간부 자격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동쟁의 냉각기간 연장, 변형근로시간제 신설, 노조운영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확대 등으로 노조활동을 원천 봉쇄하였다.

쟁, 자주적 운동단체 결성과 활동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원하거나 주도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날로 격화하는 민주화운동의 주요동인으로 작용하면서 독재정권의 완강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동안 한국노총은 4·13호헌 지지성명을 내는 등 역사를 거슬렀다.

4. 1980년대 노동입법

헌법 제31조는 단체행동권 행사만 법률에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행사는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고 한 유신헌법 제29조 제3항을 그대로 두고 ‘방위산업체’를 부가하였다. 1980년 12월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4법을 전면 개정하고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법에서 행정적인 지도로 운영된 노사협의회제도를 강제화하였다. 특히 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골격은 첫째,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당해기업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인 자’로 하였다. 둘째, 노사협의회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노동부장관이 해산 또는 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직접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누구도 협의회의 운영에 개입·방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별 조합에 한정하고 단위노동조합은 3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의 1/5 이상이 찬성해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조설립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또 단위노조가 산별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산별연합단체가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소속 연합단체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노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임기를 규정하여 비위노동자를 배제하고 임원의 장기재임을 방지하고, 전임임원의 겸직을 금하였다. 노조 운영상황의 공개의무화, 단체교섭권의 제3자 위임범위 제한, 제3자 개입의 금지조항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취소·변경권 부여, 유니온숍 규정의 삭제 등과 같이 개정하여 노조운동과 노사관계의 자율성 회복을 지향하던 당초의 법개정 의도는 노동운동의 탄압으로 이어져 심각하게 왜곡·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노동쟁의조정법은 공무원, 국·공영기업과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금지, 사업

장 밖에서 쟁의행위금지, 쟁의행위에서 제3자개입금지, 냉각기간의 연장, 구법에서 허용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뿐 아니라 모든 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강제중재회부가 가능토록 한 것 등과 같이 개정하였다. 따라서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범위를 일부 조정하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노사 당사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개정하였다. 동일사업 내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임금채권우선변제에서 조세·공과금보다 임금채권이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였다. 또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체불 사용자에게 체형(體刑)을 인정하였다. 노동시간제도를 유연화하여 4주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영역의 규율·통제 강화에 대한 대가로 노동보호법 영역에서 상당한 보완조치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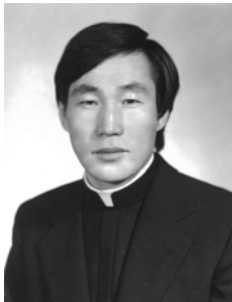
1981년 12월에 근로기준법의 안전·보건과 밀접히 관련된 ‘근로안전관리규정’과 ‘근로보건관리규정’이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1984년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당초 법개정의 명분에도 노사지치를 침해하고 노동운동의 통제·탄압에 기여한 1980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아 개정을 거세게 요구하자 결국 1986년에 개정하였다.

노동조합법은 상급노동조합단체를 제3자에서 배제하고, 조합비 일부를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토록 한 강제규정을 삭제하였다.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해산명령 요건을 시정명령 이후로 한정하고, 상급연합단체로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때 행정관청의 승인을 신고제도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였다.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를 처벌하되, 노동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게 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준공익사업 지정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와 공익사업 범위축소, 제3자개입 금지규정에서 상급연합단체 제외, 냉각기간과 알선기간 단축, 노동쟁의 발생 일방신고와 상대방 통지로 전환, 방어적 직장폐쇄 규정의 명문화, 직권중재를 공익사업에 한정하도록 개정하였다.

✻ 제2절 노동사목위원회의 정착

1. 도시산업사목위원회의 변화



이용유 신부

1980년에 서울대교구 도시산업사목위원회가 크게 달라졌다. 도시산업사목위원회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양성한 이용유 신부가 도림동본당에서 보좌신부와 주임신부로 사목경험을 쌓고 1980년 5월 15일에 제2대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용유 신부는 도시산업사목위원회라는 명칭 대신에 노동사목에 집중되는 ‘노동사목위원회’로 개칭하고, 노동사목을 전담하는 노동사목위원회가 도시빈민 활동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CO분과를 분리시켰다. 따라서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총무였던 김혜경이 사직하고 백월현(리디아)이 후임총무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해 6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는 혼란한 정치상황과 위원장 교체 등 사정이 많아 취소되고 상임위원들의 모임으로 대체되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방향을 모색하였다.

2. 노동사목회관 건립

을지로 5가에 있던 북부연합회 본부건물과 남부연합회 본부였던 신길동의 돈보스꼬청소년센터는 197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의 회합·교육·친교·거주 등의 공간으로 노동자들을 성장시키고, 국민들에게 노동계의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 을지로 5가 이향노동자의 집 철거와 종로 노동사목회관

을지로 5가의 주택은 도심에 있어서 교통환경이 좋고 평화시장과 가까워 강북의 젊은 노동자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데 유리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지은 이 목조건물은 특별히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해져 북부연합회 지도신부인 도



노동사목회관 현판식(김옥균 주교, 도요안 신부,
구요비 신부, 주수욱 신부)

미카엘 신부가 철수한 뒤에 성골롬반외방선교회가 서울대교구에 양도하였다. 서울대교구는 얼마 동안 같은 자리에 노동자들을 위한 새 집을 짓고자 하였으나, 서울 지하철 2호선 공사 계획으로 건축법이 자주 개정되고 적당한 건물을 짓기 위한 기금이 없었으며, 건축을 해도 관리자가 없어 신축계획을 포기하였다.⁷⁾ 북부연합회는 10년 동안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한 유일한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금치 못하였다.⁸⁾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은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본부, 이향근로자 숙소, 가르맹 야간학교, 노동자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장소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1980년에 대책을 세

웠다.⁹⁾ 그러나 매우 위험하다는 건축가의 진단에 따라 1982년에 철거할 때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지도신부인 주수욱(朱秀郁, 베드로, 1955~) 신부와, 남부연합회 지도신부인 도요안 신부 그리고 서울대교구 총대리 경갑룡(景甲龍, 요셉, 1930~) 주교가 이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이 건물을 교구로 이양할 때 노동자들을 위한 건물로 사용해야 한다고 뚜렷하게 말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 집에서 가까운 종로에 성당을 건축할 예정이었는데, 본당신자들이 부족하여 장대익(張大翼, 루도비코, 1923~) 신부가 종로성당을 고층으로 계획하면서 이 곳에 노동사목회관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서

7) 이미 보수공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건물이 낡았다고 판단한 서울대교구가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수도회)에 위임하여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원하는 곳을 찾지 못하였으며, 한때 살레시오회가 맡을 계획을 세웠으나 자체 사정으로 포기하였다. 대신 새로 건축하고자 하면, 건축기금은 외국인조와 교구보조로 가능하며, 건물 운용은 노동사목위원회·노동문제상담소·가톨릭노동청년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을 그 안에 둘 수 있고, 숙소·침실과 피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건물유지와 운용은 노동사목위원회·노동문제상담소·신용협동조합 임대료와 주일미사 헌금 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물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임을 갖고 상주할 수 있는 수도회나 뜻 있는 사제들을 찾았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1982년 4월 14일자.

8) 도요안, 같은 글, 68쪽.

9) 부록 3에 북부지구연합회 회관건립추진계획(안) 수록.

울대교구청이 을지로 5가 집을 매각한 대금을 종로성당을 짓는 데 보조하는 대신 건물 일부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와 노동장년회 등이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¹⁰⁾

2) 근로자센터 신설계획

돈보스코청소년센터는 남부연합회 사무실이 있던 곳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회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활동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이 이용유 신부로 바뀌면서 도림동성당 내에 근로자센터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교구청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하였던 이용유 신부가 갑자기 선종하여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3. 이용유 신부 선종과 위원회 변화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한 지 1년도 못된 이용유 신부가 1981년 3월 15일에 갑자기 선종하였다. 1981년 4월 22일에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도요안 신부와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지도신부인 구요비(具要備, 읍, 1951~) 신부를 임명하여 잠정적으로 위원회를 끌어가다 1982년 3월부터 도요안 신부가 다시 위원장이 되었으며, 주수욱 신부가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지도신부, 오영진 신부가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강영자 수녀가 북부연합회 지도수녀를 각각 맡았다.¹¹⁾ 1982년 4월의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사목 지도신부의 역할과 노동사목의 개념, 노동사목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노동자 교육, 북부회관 건립문제, 노동사목위원회 모임운영,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 모임추진,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실, 노동사목위원회 총무 역할 등을 토의하면서 노동사목위원회의 제반현황을 점검하고 정립하였다.¹²⁾

10) 같은 글, 같은 쪽.

1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1982년 4월 14일자.

12) 첫째, 지도신부의 역할과 노동사목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목'의 정의를 예제키엘 예언서와 루카복음을 근거로 설명하였으며, 노동사목은 카다인 추기경의 설명을 예로 들어 노동계 안에 교회상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화이고, 부차적으로 노동사목을 통해 의식개발을 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실천적인 결론으로서 본당사목을 하는 사제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젊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

서울대교구 총대리 경갑룡 주교의 배려로 노동사목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사회사목회관 사무실 가운데 하나를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¹³⁾ 총무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과 총대리 주교가 별도로 의논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모임을 한 결과 지도신부끼리 사목교류가 중요하다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가톨릭노동청년회도 지도신부모임을 구성하되, 구체적으로 팀을 지도하는 신부들이 없으면, 젊은 보좌신부들을 계몽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필요성과 사목에 관심을 갖도록 모색하고, 지도신부모임을 주수육 신부와 구요비 신부를 주축으로 구성하여 추진기로 하였다.¹⁴⁾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가 교구 총대리 경갑룡 주교를 면담한 이후 구체화한 사항¹⁵⁾은 첫째,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실과 총무는 노동사목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위임하였다. 총무는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등과 같은 사도직단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도직단체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위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양성은 신학생·신부단·수녀단·평신도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수련회를 통하여 노동사목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돈독하게 한다.¹⁶⁾ 셋째, 사무실을 명동 사회사목회관 3층으로 이전하는

모임을 추진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의 노동자들과 노동청·장년들이 교회와 밀접해지도록 연수회(교육)를 개최하며, 노동사목과 관련된 단체와 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노동사목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자질)에 관하여 순수한 가톨릭 노동활동(운동) 단체로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고, 당시 노동사목위원회에 소속된 순수활동단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CO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산되었다. 셋째, 노동사목위원회가 설립된 후 1975년까지는 연 2회 총회와 각 분야 연수회 등이 활발하였고, 노동사목위원회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되어 노동사목위원회보다는 각 분야별로 잘 해 나갔으나, 그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 탄압과 같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계 안에 교회상을 고취시키고 기타 교회 내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자와 관련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넷째, 노동사목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 지도신부 각 1명, 지도수녀(대표) 1명과 총무로 구성하여 노동사목 전반을 협의하고, 회합은 격월로 1번 하기로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 지도신부,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수녀단 대표,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남녀회장 중 1명,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부연합회 남녀 회장 중 1명,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장, CO조직운동 대표 1명, 총무로 구성하며, 격월로 1회 모여 각 분야별 활동을 교류하고, 노동사목위원회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일들을 결정, 진행하기로 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1982년 4월 14일자.

- 13)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실이 주교관 가까이에 있어서 특수사목과 본당사목 간의 이해를 좁힐 수 있고, 관련단체와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 14)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었던 문제를 종합하면, 노동자에게 교회상을 심어주고, 노동사목의 뚜렷한 개념 내지 정의가 필요하며, 가톨릭 일반노동자와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사목과 교회상을 보여주고 신앙관을 적립시키기 위한 교육연수회 개최, 그리고 노동회관 건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사료되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노동사목위원장과 서울대교구 총대리 경갑룡 주교가 면담한 뒤 주교의 뜻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 1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1982년 5월 21일자.

문제는 서류보관과 통신연락, 노동사목위원회 각 분야의 교류, 교구 내 다른 단체와 교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으며, 비용은 교구보조금으로 결정하였다.¹⁷⁾

1983년에 위원장 도요안 신부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부연합회 김현배(金鉉培,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955~) 지도신부, 북부연합회 주수욱 지도신부, 가톨릭노동장년회 오영진 지도신부 외에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안상인(安商仁, 요셉, 1939~) 신부 등 교구행정 신부들을 참석시켜 교구의 관심과 배려를 드러냈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최창무 신부 등을 참석시켜 신학적 토대를 강화하였다.¹⁸⁾ 또한 프라도수녀회 정점순(세실리아) 수녀와 노동문제상담소 김말룡 소장,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김어상 교수,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김병권 부회장 같은 전문가들을 참여케 하여 실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들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당 안에 가톨릭노동청년회도 조직되어 평신도사목의 외연(外延)이 확장되어야 하고, 노동사목이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강해지고 회원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는 등 일반노동자들을 위한 사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교구 내 본당사제들에게 노동사목에 적극 관심과 열성을 갖도록 교구장 명의로 사목공문을 발송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¹⁹⁾

1983년 12월에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남자회장 김인걸, 북부연합회 여자회장 서순희, 남부연합회 남자회장 임영호(요셉), 남부연합회 여자회장 정필순(테레사),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장 김성진, 가톨릭노동장년회 총무 김봉순(안나) 등과 읍서머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 본부 전 회장 용동진(龍動震, 바오로, 1955~)이 참석하였다.²⁰⁾ 한편, 노동사목위원회 총무는 우희옥 수녀로 교체되었으며, 서울대교구 총대리 경갑룡 주교가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하여 노동사목에 대한 교구의 절대적인 관심을 확인시켰으니²¹⁾, 우희옥 수녀가 총무의 역할을 수

16) 을지로 5가 북부연합회 건물 문제는 위의 '1) 을지로 5가 집 철거와 종로 노동사목회관'에서 다루었음.

17) 월 임대료 100,000원씩 책정.

18) 서울대교구가 1983년 11월 14일자로 도요안 신부를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에 제임명하고 새로운 위원들도 임명하였다.

1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12월 16일자.

2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3년 12월 16일자.

21) 경갑룡 주교가 1980년대는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맞는 중대한 시기로 노동사목 방향은 교회를 기도로 인도하는 것임을 각성시키면서 지도층이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노동사목 요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회의 현실참여는 성사적이며 교회는 복합적인 진리를 가진 신비체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여야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노동사목에 온 힘을 기울이고, 특히 지식적인 위원이 아닌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1983년 12월 16일 제1회 서울 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 모임 보고서. 또한 "노동사목위원회는 연령이나 신분, 직업 등에서 교회 안의 모든 계층이 다 포함된 다양한 구성원이다. 성직자·수도자·평신도가 모두 참여하는 이상적인 모임이며 교회의 축소판이다."이라고 하여 당시 서울대교구의 노동사목이 전 교회 차원임을 강조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2월 16일자.

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식이었다가 1984년 8월부터 이무술(테레사)이 총무로 임명되었다.²²⁾ 그 해 2월부터 남부연합회 여자회장 이숙혜²³⁾, 10월부터 북부연합회장 이경엽이 참석하기 시작하였다.²⁴⁾

1985년 3월에 파리외방전교회 홍세안(Roncin Michel, M.E.P., 1946~) 신부와 임경명(Emmanuel Kermaal, M.E.P., 1945~) 신부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며, 홍세안 신부는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를 맡았다.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주수욱 지도신부가 교도사목 전담사제를 겸하였다.²⁵⁾ 5월에 프라도수녀회 박순애(아나스타시아) 수녀가 정점순 수녀를 대신하였으며, 황상근(黃相根, 베드로, 1941~)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지도신부가 읍서버로 참여하였다.²⁶⁾ 9월에 서울대교구청 김병도 신부, 송광섭(宋光燮, 베드로, 1938~) 신부, 함세웅(咸世雄, 아우구스티노, 1942~) 신부 등과 북부연합회의 김영선, 남부연합회 임원 정연향²⁷⁾, 11월에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박영기 교수, 남부연합회 남자회장 안진선, 노동장년회 회장 박근수, 노동장년회 부회장 송양섭 등이 새로 들어왔다.²⁸⁾

1986년 1월에 북부연합회 여자회장 김월자²⁹⁾, 3월에 송진(宋眞, 발렌티노, 1949~) 신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곽 아가타 수녀,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임원 임재복 등이 참석하고³⁰⁾,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회장 성종석(요한 크리스토포)이 7월부터 읍서버로³¹⁾, 9월에 북부연합회 회계 박용국³²⁾, 11월부터 북부연합회 회장 고옥자(테레사)와 남부연합회 남자회장 심

2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8월 30일자. 노동사목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보강되어 구성원 분포가 적절해지자 사목목표도 다음과 같이 뚜렷해졌다. 즉, 1. 서울대교구와 노동계 안에서 교회활동을 조정함. 1) 운동들의 확장, 2) 전담요원 양성과 노동사목위원회 사목실 운영, 3) 교구 내 노동사목 계획에 관련된 예산조정, 2. 위원회의 회원들과 회원들이 속한 조직활동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 3. 각 회원들이 속한 조직의 활동을 복음 차원에서 강화함.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각종 사회회칙, 특별히 당시 교황이 발표한 회칙들의 가르침에 따라 연구, 교육하고 양성하여 그 정신에 일치하도록 함. 5. 노동계 안에 활동하는 가톨릭사도직(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과 함께 노동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교회의 응답 가능성 여부와 그 적절한 시기를 식별하고자 함.

2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2월 16일자.

2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10월 25일자.

2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5년 3월 7일자.

2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5년 5월 9일자.

2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5년 9월 12일자.

2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5년 11월 14일자.

2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1월 16일자.

3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3월 13일자.

3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7월 8일자.

3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9월 9일자.

재익, 남부연합회 여자회장 김지혜³³⁾, 정종국 등이 참석하기 시작하였다.³⁴⁾

1986년 이후 노동사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임명되었다. 즉,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총무, 위원으로서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북부연합회 남녀회장과 지도신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부회장과 지도신부, 수녀분과 대표, 그리고 그 외에 교구장이 임명한 사제들과 평신도 등이다.³⁵⁾

4. 200주년 기념사목회의 의안과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

1984년에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때 노동사목위원회도 동참하였다. 1982년 4월부터 노동사목에 관계하는 담당자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사제단과 수녀단 모임을 전개하면서 경갑룡 주교와 토론하였으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을 만들었다.³⁶⁾

1981년 9월 14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로운 사태』 반포 90주년을 즈음하여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³⁷⁾을 반포하였다. 1984년 8월 30일부터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오영진 신부가 회칙의 반포배경, 핵심과제, 시대상황에 따른 의미 등을 강의하였다. 위원들이 이 회칙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도 주교들의 이름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문헌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노동문제상담소 김말룡 소장과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김어상 교수에게 한국의 노동문제, 특히 산재와 휴일 등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³⁸⁾

1980년대에도 50%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었으며, 소수의 독점 부유층과 소득격차가 심각한 지경이었지만, 각종 제약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동하지 못하였다. 1984년 10월 29일에 노동사목위원회가 노동문제에 대한 사목교서를 서울대교

33) 본래 이름은 주에숙(프란치스카)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교육자, 2007년 12월 21일자 증언.

3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11월 11일자.

35) 천주교서울대교구 교구청, 공문 1986년 3월 18일자.

36) 이 작업은 한국 최초로 노동조합이 창립된 1898년 5월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발족된 1958년 11월까지 교회가 노동자들의 문제들에 응답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사태』와 같은 회칙들에 대한 번역과 반응 또는 시대별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제나 평신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부록 3에 전문 수록.

37) 한국가톨릭대사전 2, 1996, 1374~1375쪽 참조.

3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8월 30일자.

구장 김수환 추기경에게 건의하였고, 김수환 추기경은 노동사목위원회에 사목교서의 초안을 위임하였다.³⁹⁾ 1984년 12월 26일부터 도요안 신부, 최창무 신부, 김현배 신부, 오영진 신부, 주수욱 신부, 김말룡 소장 등이 '교서문헌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회칙을 우리 상황에 맞고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교회의 가르침을 토대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게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하는 인간』을 노동에 대한 가르침, 우리의 현실분석·평가, 사목적인 배려 등으로 분류하여 사목교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교황이 발표한 회칙과 사목회의를 통해서 작성된 문안들을 참조하여 초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둘째, 한국의 현실은 김말룡 소장과 김어상 교수의 자료들과 현장보고서들을 참조하기로 하였다. 셋째, 사목적 배려는 가톨릭노동청년회나 가톨릭노동장년회 등이 보완하고, 가톨릭농민회나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평가하여 사목자들에게 바라는 바를 표현하도록 하며, 한국 노동사목의 기초 가르침을 구체화하는 교구, 본당에서 조직되고 실현될 수 있는 과제로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목교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각 본당사목위원, 구역장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도록 사목국에 부탁하고, 다른 교구들도 활용하고 수도자들이 활동하는 데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 가르침의 내용은 오영진 신부와 김현배 신부, 주수욱 신부가 맡고, 한국적 실정은 김어상 교수와 김말룡 소장이 준비하였으며, 사목적 배려는 최창무 신부와 도요안 신부가 준비하였다.

이를 토대로 1985년 1월 9일에 최창무 신부와 도요안 신부가 초안을 검토하고, 1월 22일에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월 15일에 최창무 신부와 도요안 신부가 두 번째로 초안을 검토하고, 3월 26일에 준비위원회에서 초안을 정리하였다. 이후 최창무 신부가 문헌을 최종 정리하여 김수환 추기경을 통하여 주교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사목교서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를 1985년 7월 5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이 사목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해의 만연과 물질중심의 가치관, 사치와 낭비풍조를 조장하여 빈부격차와 인간소외 가속화를 초래하는 현실을 언급하고,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되고 소외되는 이들의 문제를 복음에 비취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 사목교서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기하였는데, 노동자와 농민의 인

39) 도요안, 같은 글, 80~81쪽.

간다운 삶의 조건이 희생되고 경제성장 결실의 분배과정에서 소외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 하면서 노동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 이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촉구한 ‘개발활동과 소외’, 인간은 항상 노동의 주체로서 품위와 역할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인간의 노동은 생산도구나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간과 노동’, 노동의 보수인 임금과 농산물가격은 시장원리가 아닌 사회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노동의 보수와 농산물 가격’, 노동자와 농어민이 인간적인 품위와 존엄이 유지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적·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기구를 조직할 권리와 조직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표명한 ‘자기 발전의 권리’, 노동의 조건과 노동자들의 권익이 국가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요청한 ‘노동조건, 산업화가 야기한 심각한 공해문제, 빈부격차의 심화, 혜택과 기회의 불평등, 사회경제적 부조리와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에서 비롯되는 ‘인간화의 요구’, 방만한 외형적 성장목표의 달성보다는 복지균형적 분배정의를 실현하여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눔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현실을 지적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계속적인 고용창출, 직업안정 사업, 직업 훈련,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한과 부당해고의 근절을 요청한 ‘임금과 실업문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하고 유해한 작업환경, 보상체계의 미흡, 농약사용에 따른 농토의 황폐화와 생태계의 파괴, 농산물의 오염, 농약중독에 의한 재해 등을 다룬 ‘산업재해와 공해’, 신·구 교회의 농민사목, 노동사목(산업선교) 활동을 용공시함으로써 산업사회를 인간화하고 농민과 노동자의 급진적인 사회적 불만을 복음의 메시지로 순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왜곡·비방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농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농업일반’, 문제가 많은 노동관계법과 설립취지대로 농어민의 권익을 위한 농어민 관계 조합의 민주화를 지정한 ‘법과 그 운용’, 도시이주민에게 중대한 생존권의 위협이 되는 강제철거와 수용문제를 지적한 ‘생존권의 보장’ 등을 거론하면서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국민경제 각 분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각별히 노동자와 농어민 등 소외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정치공동체의 당연한 본분임을 강조한 ‘공권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와 보복의 위험 없이 조합 활동에 참여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기업주에게 촉구한 ‘기업에 대하여’, 교회에 노동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이주민 등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깊은 이해, 노동자들에게 휴식과

휴가를 받을 권리⁴⁰⁾와 신앙생활, 가정과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옹호하고, 농민들의 생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구매 등 조력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한 ‘교회에 대하여’ 등을 서술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올바로 이해되고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 사회교리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농어민의 생활여건과 공장노동자들의 실정에 맞게 전례시간, 교리교육, 예비신자교육 시간을 마련하며, 교회의 사도직단체(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에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이항사목활동을 강화하고, 도시이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와 농어민의 문화활동에 조건과 조력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하며, 헌신적인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때 관용과 사랑으로 대화하고 협력하기를 요청하는 ‘사목적 당부’를 언급하고, 교회는 하느님께 불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유린당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표적과 원천이 되어야 하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며, 이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맺음말’로 마감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 사목교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이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사목교서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여 소개하고 교육하였다.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의 피정, 훈련회, 월레미사에서 이 사목교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였다. 또한 이 사목교서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탐색하고 방안을 모색하였다.⁴¹⁾ 이 사목교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에 대한 시각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의 준거가 되었으며, 교회 성명서나 강론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⁴²⁾

5. 노동사목위원회의 역할 확인

전두환군사정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과 같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감시하며 상호분열을 책동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주요인물들을 용공분자(容共分子)로 몰아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더욱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억압과 목살로 노동문제를 해

40)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노동(42조), 주휴(45조), 월차유급휴가(47조), 연차유급휴가(48조)의 규정이 있다.

4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5년 9월 12일자.

42) 부록 3에 전문 수록.

결하려는 노동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사회는 계속 혼란스러웠고,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항거를 지속하는 현실에서 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임원들, 노동사목위원회 위원들과 지도신부들에게 교회 가르침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을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요청하였다.⁴³⁾

노동계가 혼란해지자 노동사목위원회는 사목교서, 노동절 강론자료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영성을 심화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통하여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교회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교구에 건의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실업문제, 무학자, 생활문제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노동사목위원회에 제출하고, 노동사목위원회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대안을 찾기로 하였다.⁴⁴⁾

그러나 1980년대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자, 기업주들이 노동조합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하도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강력한 노동조합을 운영하던 청계피복, 원풍모방 노동조합 등을 해체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지역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노동조합을 결성해도 지탱하기 어려웠다.

노동자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는 이전보다 더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회역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즉, 노동사목위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같은 사도직단체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키는 데 조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위원회 위상에 혼란을 느끼는 위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현장의 문제를 수렴하고,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길잡이 역할과 시대적인 요청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데 지침이 되는 규약을 만들기로 하였다.⁴⁵⁾ 규약초안을 1986년 6월 회의에서 심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규약안을 통과시키고 교구장에게 인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⁶⁾ 규약이 마련되자 1986년 7월 회의에서 최창무 신부가 노동사목의 개념을 ‘노동’과 ‘사목’ 두 단어

43) 부록 3에 전문 수록.

4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3월 13일자.

4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5월 13일자.

4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6월 10일자.

로 정리하고, 노동사목위원회의 위상과 활동방향을 설명하였다.⁴⁷⁾

1983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각 본당사목위원회에 노동사목분과를 설치하는 문제는 1986년까지 지속되어 이를 교구청에 건의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본당이 많고, 또한 노동분과를 설치하기에는 준비작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더구나 평신도사도직협의회도 노동분과에 대한 뒷받침이 전혀 없으므로 다각적으로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리고 노동사목위원회가 노동자와 실업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하였다. 노동자들과 실업인들이 함께 토론회를 통해서 상호 의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 뒤에 적절한 의제를 찾아가면서 모임을 새롭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상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도신부들이 먼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⁴⁸⁾ 그러나 이 실업인들과 노동자들의 만남은 가톨릭노동청년회 임원들이 대체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가톨릭노동장년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노동사목위원회가 주선할 것을 요청하였다.⁴⁹⁾

1980년대 ‘운전기사사도회’가 서울대교구 산하단체로 등록하고, 택시운전기사 회원 250여 명이 가·나·다 조로 편성되고, 라조는 영업용운수에 종사하였다.⁵⁰⁾ 매월 3번 평일미사를 봉헌하고 특별강의를 수강하였다. 교구 산하단체 중 의류계통(양장점)에 종사하는 30여 명이 생활체험나누기, 위문방문 등을 하고, 가톨릭약사회 200여 명은 매월 미사를 봉헌하고, 특별강의를 수강하였다. 그밖에 금융 11개 단체 등을 비롯한 산하단체들이 직종별로 안고 있는 문제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활동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본당활동과 달리 일터를 중심으로 사도직활동을 전개하는 이들을 위하여 교구에서 지도신부를 임명하였다.⁵¹⁾

4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7월 8일자. 부록 3에 전문 수록.

4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9월 9일자.

4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11월 11일자.

50) 그러나 개인택시나 화물차를 운영하는 이들은 자영업자들이고,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은 노동자였는데, 과도한 사납금 같은 임금문제와 하루 12시간 이상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업주와 자주 충돌하였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거의 업주 편에서 문제를 처리하거나, 소요사태를 겨우 막아내는 정도의 미봉책으로 그쳤기 때문에 기사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이들은 개인택시업자들과는 달리 자유시간이 거의 없어 운전기사회에 참여하더라도 곧 탈락되었고, 대개 장년층이므로 이들을 가톨릭노동장년회로 인도하여 자신의 복음화와 이웃의 복음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근무시간이 워낙 긴 데다 매주 주야교대를 하는 형편이어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회합은 물론 미사시간도 맞추기 어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5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9월 9일자.

6. 노동절 행사

노동사목위원회는 민주화욕구가 정점에 이르러 정권위기를 감지한 군사정권이 민중의 요구에 승복하여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할 수밖에 없던 1987년에 노동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회장이었던 용동진과 노동사목위원회 이무술, 박순애 수녀 등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북부연합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등이 주최하고 노동사목위원회가 후원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하였다. 봉헌미사로서 시작하고 각종행사를 통하여 신자들이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노동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기(喚起)하고 노동자들이 더욱 단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⁵²⁾

1987년 3월 8일에 도림동성당 교육관에서 약 300여 명이 모여 노동절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동안 단체별로 간소하게 치른 것과는 달리 이 날은 미사를 시작으로 강의와 사례발표, 그리고 풍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오랫동안 큰 행사를 치르지 않아 회원들이 다소 미숙한 면도 노출하였으나,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을 만들어 하루를 보낸다는 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날도 형사가 행사장에 나타나 감시하여 구로1동성당에서 야학하는 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참석하여 그 중 2명이 강제로 사표를 냈다. 관할경찰서장에게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요청하고, 정의평화위원회에 인권문제로 접수하였다. 한편, 가톨릭신문사가 노동절을 기하여 노동사목 세미나를 소개하고, 노동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황상근 지도신부의 노동절 강론자료를 전국에 배포하였다.

7. 종로 노동사목회관 입주

1987년 4월에 종로성당 건물이 완공되자,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실을 4월 28일에 이전하고⁵³⁾, 6월 19일에 3, 4층 240평에 노동사목센터를 개관하여 노동사목위원회, 가톨릭노동청년

5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1월 13일자.

53) 이에 앞서 종로성당 3, 4층에 노동사목회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구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받아들 것을 위원들이 요청하였으며, 이 회관에 을지로 5가 집에 있었던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사무실과 함께 노동사목위원회, 노동문제상담소 등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노동문제상담소는 명동에 그대로 남았다. 또한 종로성당 위치가 일반 주거지가 아닌 상가이므로 신자들이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클 것



종로노동사목회관 개관식

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가톨릭노동장년회 사무실과 회의실, 강당, 숙박시설을 갖춘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의 중심지가 되었다. 을지로 집이 철거된 이후 신당동성당, 청량리성당 등을 전전하던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의 보금자리가 다시 마련되었고, 가톨릭노동장년회도 사무실이 생겼다.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교구 내 모든 성직자들과 기관장들에게 종로에 신설된 노동사목센터의 제반사항을 소개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의 장을 본당에 적극 마련함은 물론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사랑을 촉구하면서 노동사목에 전반문제들을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담당사제들과 논의한 뒤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⁴⁾

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9월 9일자. 성당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자 입주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종로성당 내부와 노동사목회관 구조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3월 17일자.

54) 부록 3에 공문 전문 수록.

8. 주교회의 시노드 준비

1987년 5월 2일에 그동안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평신도 세미나 준비와 1987년 9월에 있을 주교 시노드의 주제를 논의하였다. 평신도 세미나는 평신도가 이해하기 쉬운 평범한 주제로 약 20분씩 4~5주 동안 시행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교 시노드 주제 가운데 ‘평신도’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⁵⁵⁾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으로도 불리는 『인류의 빛』(*Lumen Gentium*)을 중심으로 도요안 신부가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에 의하면, 사제와 평신도가 대등한 관계이면서도 역할이 직무적으로 구분되므로 이 주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3장과 제4장,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읽은 뒤에 최창무 신부가 평신도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고 토론하였다.⁵⁶⁾ 가톨릭노동청년회나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평신도의 역할을 잘 몰라 사제가 할 일과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여 논쟁하므로 임원들이 연구한 뒤에 옳은 점들을 인식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이를 따르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제와 평신도들이 자주 만나 대화할 때 서로의 어려움을 알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으므로 사제가 먼저 주위 사람들의 참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달자 역할을 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장, 특별히 12절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라는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로서 그 역할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9월에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는데, ‘근로기준법 연구’와 ‘사례연구’를 원하는 이들이 많았고, 『교회헌장』이나 『평신도교령』을 원하는 경우는 1명뿐이었다.⁵⁷⁾ 노동자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강의를 녹음하여 섹션이나 그룹별로 연구하고 토의하며, 시간이 없어 참석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호소할 것을 요청하였다.⁵⁸⁾

55) 이 주제는 4년 전부터 제기되어 모든 주교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평신도단체들은 받지 못하였는데, 이날 회의에 평신도들의 활동과 교회에 이바지하는 바와 영성적인 문제를 다룬 다음, 의견을 집약하여 주교들에게 개진하기로 하였다.

5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5월 2일자.

5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7월 7일자.

5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7월 7일자.

✻ 제3절 사제와 신학생, 수도자 양성

1. 신학생 양성

1980년대는 노동사목을 위하여 양성된 신학생들이 속속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들은 유신시대라는 고난기인 1970년대⁵⁹⁾를 극복하고 1981년 2월에 구요비와 주수욱 신학생이 사제로 서품되면서 프라도사제로 서약하였으며, 1982년에 김현배 신학생이 사제로 서품되었다. 1981년 6월 10일과 1982년 5월 21일에 양성문제를 토의하였는데, 신학생·신부단·수녀단·평신도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수련회를 통하여 노동사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해를 돈독케 할 것을 요청하였다.⁶⁰⁾

1983년 2월 23일에 노동사목위원회가 돈보스꼬청소년센터에서 신학생훈련회를 개최하였고, 10월 5일에 ‘밀알회’ 회원들과 도요안 신부가 대신학교에서 만나 이들이 교육현실에서 닦는 제반문제들을 토론하였다. 1984년 2월 6~10일에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제2차 신학생연수회를 시행하였다. 이어 7월 1~4일에 ‘노동사목에 관심 있는 신학생’ 여름 피정을 김현배 신부 지도로 거행하였다. 1985년 2월 11~16일에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차 신학생연수회를 개최하였다. 1986년 1월 27일부터 신학생 겨울방학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초의 겨울방학 신학생 연수회는 서울·광주·대구 대신학생들과 수도자·평신도

59) 1970년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신학생들의 노동사목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대신학교 신학원의 방침이 바뀌어 신학생들이 외부활동을 하기 어려워져 이전처럼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가톨릭대학장과 신학원장을 겸임하기 시작한 최창무 신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로 신학생들의 노동사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활되었다. 노동사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학생 모임을 1978년에 ‘가톨릭대학 노동사목연구회’(밀알회)라고 칭하고 자신들과 후배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서울대교구 구요비, 주수욱, 김현배, 김홍진 등과 원주교구 홍량표, 대전교구 이범배 등이었다. 신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 연구모임의 탄생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한편으로는 시대의 징표를 따르고자 하는 신학생들의 고뇌가 담긴 결정의 산물이었다. 현장체험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활동을 통한 의식발전이 조화되어 밀알회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밀알회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노동사목연구회, 30주년 밀알회지, 가톨릭대학교 노동사목연구회, 2001, 1쪽; 구요비 신부, 2007년 11월 16일자 증언.

60)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당시는 노동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심하여 노동사목위원회나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남·북부연합회 등의 회의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문제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용동진 신부, 2007년 10월 7일자 증언.

69명이 참석하여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수회에 참석한 이들은 여름방학에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광주대신학교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86년도 신학생 노동문제연수 자료집’인 『하느님, 인간, 노동』을 발간하고, 평신도들에게도 이러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와 의견을 조율하였다.⁶¹⁾

1970년대 신학생 양성은 이론교육과 피정, 현장체험처럼 다양하게 전개하였으나, 1980년대는 현장체험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노동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학생운동권의 위장취업을 감시하던 상황에서 신학생들의 현장체험은 어려웠다. 대신에 신학생들에게 노동사목 이론과 현실문제들을 환기시키고, 관심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6·29민주화선언’이 선포되기 직전인 1987년 6월 6일자 ‘가톨릭대학보’는 노동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들을 깊이 있게 조명하였다.⁶²⁾

2. 사제단모임 활성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극심하게 탄압하던 1980년대에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찾고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나, 업주들과 국가기관은 공산주의 사상과 전혀 무관한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이들을 용공분자로 몰아 구속 수감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려 생계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계와 업주, 공권력이 계속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피해와 혼란이 거듭되는 노동문제를 교구 차원으로 관심을 확대하여 구성원을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북부연합회 지도신부와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 지도신부 외에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와 교구청 사제들을 참석시켰다.⁶³⁾

6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7년 3월 17일자.

62) 이 날짜의 신문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즉, ‘근기법 해설 및 사례연구: 윤성천’, ‘노동조합법 해설: 손창희’, ‘노동운동사: 김윤환’, ‘사회원리: 프라이스’, ‘회의진행법: 서정호’,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김금수’, ‘종업원 경영 참가제도: 이영희’, ‘산업노동관계총론: 박영기’, ‘단체교섭론: 천영세’, ‘부당노동행위처리: 이상운’, ‘협동조합론: 장원석’, ‘산업민주주의: 김윤환’, ‘노동사목: 주수욱’, ‘가톨릭노동청년회란?: 황상근’, ‘가톨릭노동장년회란?: 홍세안’, ‘해방신학이란?: 오경환’ 등이다.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들과 수녀들의 관심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와 피정 등을 자주 개최하고, 이들의 정기모임을 확대하였으며, 중대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모임을 신속하게 개최하였다. 노동문제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1981년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등의 사도직 지도신부 또는 노동사목과 관계하는 프라도사제들이 구로1동성당(현재 구로본동성당) 등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노동계 현안을 토의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 뒤 이를 적극 실천하였다.

3. 외국교회의 관심

1983년 1월 10일에 아시아주교회의의(FABC) 산하 단체인 BISA⁶⁴⁾ 주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노동과 빈민분야를 다루었다.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가 뉴질랜드 주교를 난곡 빈민촌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실태를 확인하게 하였다. 그 주교는 김혜경으로부터 불기 없는 곳에서 사는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을 돌보는 이웃들의 사례를 보고 받고, 주민들의 가난한 삶을 확인한 뒤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토로하였다.⁶⁵⁾

1983년 6월 9~14일에 독일 신부·수녀·평신도들이 상지회관에 머물며 한국노동계를 소개 받았다. 독일교회와 한국교회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독일에서 유학한 이래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국 복음전래 20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교회는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한국교회의 활동현황, 특히 노동 등 사회활동을 알고자 하여 도요안 신부 등 노동사목 관계자들이 이들을 노동현장으로 안내하여 한국의 노동현황과 교회의 노동사목을 견학시켰다.⁶⁶⁾

1984년 3월 5일에 미국주교단의 노동문제 담당자 히긴스(George Higgins) 몬시뇰이 한국 메리놀외방선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노동현황과 노동사목 시찰하였다. 히긴스 몬시

63) 1980년대부터는 외국인선교사들이 가톨릭 액션 단체들의 지도신부 직위를 서서히 내놓았고 노동사목위원회를 통하여 양성된 신학생들이 준비단계를 거친 뒤 정식 지도신부가 되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지도신부로 구요비 신부, 남부연합회 지도신부로 주수욱 신부가 1982년 3월 11일 각각 발령을 받아 활동하고, 계속 노동사목에 관심 있는 사제들이 양성되어 교구사제들이 지도신부를 담당하였다.

64) Bishop's Institute for Social Action: 아시아·태평양 주교들이 특정국가를 방문하여 그 나라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직접 겪는 프로그램(exposure program).

65) 도요안 신부, 2007년 11월 1일자 증언.

66) 같은 증언.

놀은 가톨릭대학교 사회교리 교수로 미국교회에서 노동문제를 가장 가톨릭교회답게 해설하는 학자이며, 미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10년 이상 지도하였다. 당시 히긴스 몬시뇰은 서울대교구 총대리 경갑룡 주교 사무실에서 노동사목위원회 위원들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⁶⁷⁾

1984년 8월 13일에 일본의 아이야코 아베 여사와 연소노동자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 등지에서 연소노동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이 한국의 연소노동자 실태를 “Child Workers in Asian”(잡지)에 의뢰하여 아이야코 아베 여사를 비롯한 조사팀이 한국에 파견되었다. 도요안 신부와 프라도 수녀회 정점순 수녀 등이 보고하였는데, 당시 조사팀은 한국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어린 소년들에게 심각한 노동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⁶⁸⁾

4. 수녀분과의 활성화

1981년에 메리놀수녀회의 문 요안나 수녀가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단을 이끌던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 유 도미니카 수녀가 원주교구로 각각 떠나 수녀단 활동이 잠시 중단되자, 1981년 9월 21일에 전국 지도신부들과 수녀들을 대상으로 노동사목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녀단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활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1982년부터 성심회의 손인숙 수녀를 중심으로 수녀단을 재구성하기로 하고⁶⁹⁾, 11월 22일에 살레시오수녀회에서 프라도수녀회, 성 베네딕토수녀회,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 전교자의 성 프란치스코수녀회 등의 수녀들 11명이 모여 노동사목 수녀단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정기모임을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활동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노동자들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둘째, 노동사목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셋째, 활동 중 어

67) 같은 증언.

68) 같은 증언.

6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2년 4월 14일자. 1980년대에 위원회에서 활동한 수녀들은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와 북부연합회 지도수녀인 프라도수녀회 강영자(테레사) 수녀와 1983년 11월부터 위원으로 참석하기 시작한 프라도수녀회의 정점순(세실리아) 수녀, 1983년 12월부터 노동사목위원회 총무로 참여하기 시작한 우희옥 수녀, 1984년 2월부터 살레시오수녀회의 민 아나스타시아 수녀, 1985년 5월부터 박순애(아나스타시아) 수녀, 1986년 1월부터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광 아가타 수녀 등이다.

려움은 무엇인가? 넷째, 소망은?

수녀분과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웠다. 즉, 기숙사는 여관처럼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전인교육을 목표로 활동해야 한다. 즉, 교리교육, 교양강좌(꽃꽂이, 수예, 예절, 성교육 등)와 공동생활을 통하여 다른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둘째, 지역노동자를 대상으로 모임과 강의, 피정 등을 통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다른 이와 올바른 관계를 인식시키며, 동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한다. 셋째, 직장에 나가 노동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계하며, 성당 가톨릭노동청년회 팀을 도와 주기로 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사제들이 사목대상을 중류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난이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동사목에 투신하는 이들의 수가 적고 산발적이었으며, 특히 다른 청년단체를 전담하는 사제가 있지만 노동사목 전담사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각자 활동할 때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인정하고 함께 방향을 찾아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노동사목에 투신하는 이들은 노동사목에 대한 신학적 바탕을 더 쌓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수녀단은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로부터 그 안에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배울 때가 더 많고, 그들이 의식 없이 자신의 활동이나 생활을 말할 때 그 안에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고백하였다. 그들에게 복음에 비추어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일깨워 주어야 함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찰할 것을 약속하였다. 첫째, 어떤 한 개인이나 그룹을 접촉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나? 그들에게 얻은 것(느끼고 배운 점)을 어떻게 돌려주었는가? 둘째, 무엇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역할(성령)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가?⁷⁰⁾

1983년 3월 7일과 5월 23일에 살레시오수녀원에서 회합한 이래 두 달에 한 번씩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1985년부터 모임이 활발해져 1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15번 모였는데, 9개 단체에서 평균 15명 정도가 매번 참석하면서 사회회칙과 복음연구, 노동자들과 대화, 팀 회합 등의 활동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노동사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방문하고 팀 회합에 동반자로 참석하며, 지도신부들과 자주 만나 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보는 눈을 바꾸고, 노동자

70)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 회합 보고서 1982년 11월 22일자.

들을 적극 찾아나서 그들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사목활동, 양성, 노동자들과 팀모임, 사목경험 나누기, 의료보험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의료혜택 지원, 병원들과 관계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대안들을 찾았다.⁷¹⁾

1975년 8월 28일에 프라도수녀회 프랑스인 안 테레사 수녀와 도 모니카 수녀가 가리봉동에 들어와 1977년 4월 28일에 청원기를 시작으로 한국인 수녀들을 양성하였으며, 첫 회원인 강영자(테레사) 수녀와 그의 뒤를 잇는 정점순(세실리아)과 박순애(아나스타시아) 수녀 등이 노동사목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프라도수녀회는 1984년 6월에 문래동분원을 성수동으로 이전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6년부터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의 테레사 수녀가 성동구 자양1동 경보빌라 206호를 얻어 노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⁷²⁾ 수녀들의 노동계 소임은 이렇게 새로 시작한 분야도 있었으나, 버스안내원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은 1980년대 버스자동화사업으로 종료되고, 공장노동자들의 기숙사도 희망인원이 줄어들어 다른 분야로 활동방향을 선회하였다.

7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3월 13일자; 1987년 3월 17일자.

7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6년 3월 13일자.

✻ 제4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1. 과도기 노동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



옥수동성당섹션 투사선서식(1983년)

유신정권이 몰락한 뒤 가톨릭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신과 이웃, 사회환경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노동상황과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주변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첫째, 1970년대에 비하여 탄압의 형태가 달라졌다. 즉, 안보논리를 나쁘게 이용하여 노동계층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노동조합을 우회적으로 부정하고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둘째, 노동조합의 주체인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외시켜 노동자는 기계처럼 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노동자들의 의식구조를 왜곡되게 유도하였다. 셋째,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이 용공세력과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릇된 논리를 전개하여 노동자들을 이간하고, 특정종교와 단절을 유도하였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이들 외에도 단순히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거나 그저 천주교신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많았다.⁷³⁾ 청계피복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

동조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회장과 전국본부 회장을 역임한 김봉순을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선동하였다는 죄목으로 지명 수배하는 등⁷⁴⁾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거나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해고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생계를 위협하거나 수배하는 등 끝없이 괴롭혔다.⁷⁵⁾ 넷째, 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신성함을 뿌리로부터 거부하였다.⁷⁶⁾

1)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

1980년 3월에 노동조합(지부장 임현재)이 50~80% 임금인상, 전 사업장 퇴직금 실시, 연간 150% 상여금 지급, 법정수당 지급, 4대 국경일과 전태일 분신일인 11월 13일의 유급휴일화 등 7개항을 내세우고 3월 21일부터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업주들이 반대하고, 4월 7일에 노동조합 간부들의 최종요구안도 업주들이 반대하자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중부시장 등 집단 상가의 대책 없는 공장이전과 폐쇄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 “저임금을 일소하고 고용안정을 기할 것”,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 “유신체제에서 구속된 노동자들을 복직·복권시킬 것”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4월 8일에 노동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서 “임금 인상하라”,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하라”, “퇴직금을 전면 실시하라”는 요구를 벽에 걸고 계속 농성하였다. 20여 명의 조

73) 이 시기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해고·전출 등 부당노동행위와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후레야 패순(주), 이리 동일섬유(주), 원일섬유(주), 동산섬유(주), 선은섬유(주), 전주 동양섬유(주), 한국건직(주) 등에서 많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단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쫓겨났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227쪽.

74) 김봉순은 5·18민주화항쟁 이후 충남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등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의하였다. 사찰당국은 김봉순이 교육한 한 여성노동자를 사주하여 김봉순이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교육하면서 반국가적이고 반기업적인 투쟁을 전개하도록 선동하였다고 사직당국에 고발하게 하였다. 김봉순이 그 여성노동자를 불러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직당국에 찾아가 사실을 해명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부와 업주들의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노동계로 순치(脣齒)시키기 위하여 회생양을 찾던 당시 군사정권의 방침을 꿰뚫어보던 교회어른의 권유로 긴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야 했다: 김봉순의 증언, 2007년 10월 28일자.

75) 광주민중항쟁 이후 노동계를 또 다시 감시하고 박해하였다. 즉, 노동운동을 철저히 단속하였고,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단체와 개인을 구속하거나 소위 삼청교육대로 끌어가 순화교육을 하였다. 노동계 속에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들 역시 단속의 대상이었다. 전화도청과 우편물검사를 수시로 집행하여 전화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편지도 받아볼 수가 없었다. 가톨릭이 아닌 여러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계속 체포되고 심문을 받는 등 여러 방법으로 단속되었다: 도요안, 같은 책, 77~78쪽.

7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221쪽.

합원들이 4월 9일에 “노조간부 단식농성에 돌입하다”라는 전단을 각 사업장에 뿌리고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사무실 밖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날과 10일에 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다. 11일에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계속 농성하고, 다른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가두시위를 벌인 다음 동화상가 옥상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4월 12일에 농성 조합원들이 600여 명으로 늘어났고, 4월 14일에 ‘전태일 추모장례식’을 거행하며 투쟁하자, 4월 16일에 업주들은 노동청이 마련한 ‘임금 19% 인상’, ‘10인 이상 업체에 퇴직금제 실시’ 등의 조건을 수락하였고 노동조합도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통일상가의 일부업주들이 합의안에 반발하여 가게문을 닫고 동화상가 옥상에 있는 근로감독관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워 합의서가 조인되지 못하였다. 4월 17일에 노동조합은 업주들의 반발이 임금인상이 아니라, 과중한 조세부담에 있다고 판단하고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감면을 단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업주들이 단체 협약서에 조인하여 종결되었다.⁷⁷⁾

2)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시련

1970년대부터 계속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동일방직은 1980년대에도 노동자들을 계속 유린하였다.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은 섬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인 이총각을 중심으로 ‘동일방직복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2일에 서울 중심가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경찰이 이들 가운데 9명을 연행하여 1명을 구속 수감하였다.⁷⁸⁾

해고노동자 30여 명이 4월 25일에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무기한 농성하자, 한국노총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주가 복직요청 탄원서를 내고, 4월 29일에 열린 중앙위원회가 ‘사회적 안정과 인도적 차원에서’ 해고자들을 보호하기로 결의하였으며⁷⁹⁾, 노동청장도 이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언명하였다.⁸⁰⁾ 동일방직 사태 발생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던

77) 이원보, 같은 책, 635~637쪽.

78) 이 때 국민연합의 함석헌, 공덕귀, 그리고 김승훈 신부, 도시산업선교회 목사 등이 노동자들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다 연행되었으며, 4월 21일 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서경석 목사와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정명자 등이 구속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81쪽.

79) 한국노총 1980: 310.

80) 이원보, 같은 책, 629쪽.



김수환 추기경과 동일방직 여공들의 만남

교회는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를 위협받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킬 것을 관계당국과 회사에 요청하였다.⁸¹⁾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은 5월 13일에 한국노총이 노동기본권확보궐기대회를 형식적인 행사로 끝내려는 데 항의하고, 이를 농성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노동기본권확보궐기대회 농성이 끝난 뒤에도 노총위원장 사무실에서 계속 농성하다 5·17계엄령 전국확대 이후 계엄군에 의하여 해산되었다.⁸²⁾

3) (주)서통노동조합의 어용화 반대투쟁

(주)서통 노동자들이 1980년 3월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업주도 5월 14일에 어용노조를 결성하려고 하자, 5월 15일에 1천여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물러가라”

81) 부록 3에 전문 수록.

82) 이원보, 같은 책, 629~630쪽.

며 공장 밖으로 나가려다 경찰의 제지로 회사 안에서 계속 농성하였다. 결국 업주가 어용노조를 포기하고, 5월 17일에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하기 2시간 전에 노동자들이 섬유노조 서통지부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9월 18일에 섬유노조가 배옥병 지부장을 정화조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12월 18일, 현장에 복귀한 지부장과 노동조합 간부 5명을 연행하여 간부 5명은 간단히 조사 받고 풀려났지만, 지부장은 21일 만에 석방되었다.

업주의 감시와 탄압에도 노동조합은 조직력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기관지 『상록수』를 발간하였다. 1981년 6월 1일에 경찰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연행하여 『상록수』의 발간경위를 집중 조사하여 지부장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섬유노조 기획위원을 지낸 이목희를 노동조합법의 제3자개입 금지혐의로 각각 구속하였으며 노동조합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서울특별시 11월에 (주)서통노동조합을 감사하고, 12월 6일에 상무집행위원 30명 전원에 대하여 임원개선을 명령하였다. 업주가 이에 맞맞추어 불구속 기소된 5명의 노동조합간부들을 해고하자, 노동조합이 이에 항의하여 조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업주가 노동조합간부들을 괴롭히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경찰이 연행하여 위협한 뒤 귀향시켜 노동조합이 무력해졌다.⁸³⁾ 교회는 (주)서통노동조합을 둘러싼 국가기관, 업주와 노동자들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⁸⁴⁾

- (가) 노동조합법의 기본취지는 노조를 보호·육성한다는 데에 있는 만큼 노조의 임원 전부를 개선하라는 행정명령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 회사가 20여 명의 노조간부를 무더기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회사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경찰은 해고된 노조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을 연행하여 특정지역에 와서는 안 된다는 식의 통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방경찰의 기능은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3) 같은 책, 660~661쪽.

84) 기쁨과 희망사목연구소, 암흑 속의 햇불 제5권, 가톨릭출판사, 1998, 70쪽 이하.

(라) 정부는 제3차개입 금지조항을 확대적용 또는 남용함으로써 노동문제를 국민일반의 관심권으로 부터 격리시켜 노동자에 대한 기업주의 월권과 탄압을 묵인 또는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4) 계속되는 원풍모방노동조합 탄압



수녀원색션(원풍모방)

1980년 7월 16일부터 계엄 사령부 수사본부가 원풍모방 방용식 지부장을 김대중내란 음모사건 참고인으로 수배하였다. 한국노총과 전국섬유노동조합이 노동계 정화라는 명분으로 방용식 지부장과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인 박순희 부지부장을 제명하고, 원풍모방은 1980년 10월 31일자로

이들을 해고하였다. 원풍모방노동조합은 정화조치 기준과 이유, 조합원 제명조치의 불법부당함을 들어 전국섬유노동조합에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회사의 해고조치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었음을 들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1980년 12월 8일에 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리와 상근부지부장, 총무부장, 상무집행위원 19명 전원과 대의원 30여 명을 강제로 해고하였으며, 수사관들이 회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감시하였다. 밤 10시 이후 여자기숙사에 여군헌병을 동원하여 수색하자, 기숙사생 500여 명이 제지하였다. 조합간부들에게 짐을 싸게 하여 강제로 시골집으로 보낸 이후 사감과 여자경비를 공수부대 여군 출신들로 교체하고 기숙사 분위기도 군대식으로 바꾸었다.

1981년 2월 18일에 노동조합의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나, 1주일 만에 서울특별시가 합동업무 감사를 하였으며, 노동조합원이 제출한 대의원대회결과 변경신고를 반려하고, 노동조합 통합대회를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부산 타이어공장과 서울 모방공장 간부들이 3월 31일에 통합대회를 거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타이어공장 노동자들이 세 차례나 불참하였으며, 회사는 노동조합에 불리한 조작을 일삼는 등 우여곡절 끝에 원풍모방 이무술, 원풍타이

어 박장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 12월 12일에 노동조합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업주는 단체협약을 미루면서 퇴직금추가분, 휴가비, 장학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였으며, 작업물량을 하청업체에 주어 가동률을 떨어뜨려 생산량 감소를 노동자들의 불성실로 호도하였다.⁸⁵⁾ 조합원들이 1981년 12월 30일 이후 ‘부당해고 철회’, ‘상여금 1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원풍모방사건경위서’를 배포하고 1980년 이후의 탄압사례를 고발하자, 경찰이 조합장 이무술에게 출두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고, 업주는 단체협약 내용을 삭제하거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교섭을 강요하다 노동쟁의발생을 신고하였다. 노동조합은 경찰의 출두요구를 거부하고 집행부를 교체하여(조합장 정선순)투쟁태세를 강화하였다.

1981년 5월 12일에 업주가 조합원의 출근을 제지하여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경비와 남자사원들이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9월 26일에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4명을 해고하였다. 9월 27일에 사원과 정체불명의 남자 100여 명이 노동조합원들을 몰아냈다. 17시간 동안 조합장을 시멘트 바닥에 꿰어앉힌 채 목에 칼을 들이대고 폭행하면서 사표를 강요하였으나 거부하자, 9월 28일 새벽에 자동차에 싣고 화곡동아파트 주변에 던져 버렸다. 이를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업주는 식당을 폐쇄하고 수도물을 끊어버렸으며, 9월 30일에 농성장에 스팀을 넣어 쓰러진 노동자들을 끌어내 경찰이 지키는 정문 밖으로 내던졌다. 실신한 노동조합원들을 병원으로 실어내고 의식이 회복되면 구로공단 쓰레기하치장에 내버려도 농성을 계속하자, 경찰과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노동자들을 난타하며 대방전철역 부근에 내버렸다.

10월 1일 새벽 4시에 전투경찰이 정문 안쪽에서 어깨를 낀 채 농성하던 노동자에게 돌진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끌어냈다. 650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끌려나왔고 72명이 입원하였다. 추석 새벽에 길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은 “죽더라도 회사 안에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고 결의하고 10월 7일에 출근투쟁을 선언하였으나, 업주가 추석휴무를 13일까지 연장하고, 경찰이 조합장을 비롯한 노동조합간부 전원을 전국에 지명 수배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10월 7일에 회사 앞에 모여 시위농성을 벌였고, 저녁에 학생·시민들이 합세하여 영등포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이 10월 13일에 출근하였으나, 경찰과 업주가 무차별 폭력으로 192명을 연행하고, 2명을 구속하였으며 12명을 20일간 구류에 처하였다. 업주는 노동자들에게 반성문과 각서를 강요하고 일부 열성조합원들을 축출하였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과 업주의 눈을 피해 다

8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소장, 원풍모방사건 경위서(1982년 1월 작성) 참조.

니면서 재기를 준비하였으나, 11월 12일에 핵심간부 11명이 전원 체포되어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되고 5명이 20일구류에 처해졌다.⁸⁶⁾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과 쟁취투쟁을 폭력으로 해결한 당국에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주)서통노동조합 문제, 인천지역 가톨릭노동청년회 문제와 함께 공문을 발송하여 항의하고 시정책을 촉구하였다.⁸⁷⁾ 교회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지지하였지만, 노동조합에 속한 각자, 각 지도자, 각 소공동체의 의견이 분분했으므로 이들을 식별하고 지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동조합 안에는 반목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정부기관들이 노동조합원들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원풍모방 노동조합뿐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도 과거 사도직 활동에 열성을 다하던 많은 회원들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생활나눔을 하지 않고 순수한 노동조합 활동만 하기로 택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신자들에게 소금과 누룩, 빛의 역할을 하도록 사목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원풍모방 민주노조가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감정문제가 격해져 성직자와 노동자들이 대화하는 중에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예를 들어 『빼앗긴 일터』(장남수, 창작과 비평, 1984) 216쪽을 보면 “연락을 받았는지 정보원들과 도요안 신부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원풍모방 여성노동자들이 대방동성당으로 갑자기 몰려들자 대방동성당 김병도 신부가 당황하여 도요안 신부를 찾았고, 도요안 신부가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의 새 지도신부인 주수옥 신부와 함께 대방동성당으로 갔는데, 주수옥 신부를 정보원으로 오해한 것이다.⁸⁸⁾

5) 청계피복노동조합 강제해산과 합법성 쟁취투쟁

1980년에 신군부가 지역지부를 해산할 때 청계피복노조를 예외로 인정하여 해체하지 않았으나, 노동청이 9월에 간부 4명을 정화조치하고 계엄사령부가 12월에 간부 9명을 연행하여

86) 이원보, 같은 책, 662~664쪽. 1972년부터 원풍모방(전 한국모방)은 노동사목위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회원들 그리고 도시산업선교회가 함께 협조하여 민주노조로 변화시켰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초까지 원풍노동조합은 한국의 민주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였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조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원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으며, 이러한 갈등은 노동운동의 미성숙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광주민중항쟁 이후에 억압과 탄압으로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분위기를 낳았다.

87) 부록 3의 (주)서통에 보낸 공문 참조.

88) 도요안, 같은 글, 79~80쪽.

수사하였으며, ‘정화 대상자 4명의 사표를 신속히 받을 것’, ‘노조고문인 이소선 여사에 대한 월급지급을 중단할 것’, ‘평화·통일·동화상가 이외의 건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조합비를 징수하지 말 것’ 등을 명령하였다. 노동조합이 뒤의 두 가지는 이행하였으나, 첫 번째 명령은 거부하였다.

1981년 1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즉시 해산을 명함’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조합이 해산명령의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합노조와 서울특별시에 항의하고 업무를 계속하였다. 1월 21일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반원들이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하고, 연합노조는 노동조합의 회계장부와 예금통장을 가져갔다. 1월 22일에 500~600명의 기동경찰들이 평화·통일·동화상가 주변을 포위하고, 노동조합 서류와 사무실 집기를 모두 가져가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간부 21명이 1월 30일에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AAFLI: Asian-American Free Labor Institute) 사무실에 몰려가 청계피복노동조합 부활과 서울특별시장 사퇴 등 5개항을 내걸고 농성하였다. 이날 노동자들이 뿌린 유인물에서 그간의 경과와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사무실을 농성장 소로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들의 투쟁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계속되는 탄압에 우리는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조직보존을 위해서 뒷걸음쳐 왔다. 언젠가 계엄령이 해제되고 사회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 그 동안 입은 타격을 곧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 왔다. (중략)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공포심에서 우리도 예외 없이 짓눌려 당국의 탄압에 저항하지 못했다. 노조간부의 상대적인 상근근로자로서의 일상성애의 매몰과 게으름 등이 우리 조직을 약화시킨 하나의 요인이었음을 고백한다.⁸⁹⁾

경찰이 1월 31일 새벽에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21명 전원을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광용이 3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당하였으며, 노동조합 지부장 임현재 등 11명이 구속되고 부상당한 신광용과 사무장 민종덕이 불구속 입건되어 징역 3년 부터 집행유예 1년 6월까지 중형을 선고 받았다.⁹⁰⁾

89) 김용기·박승욱,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화사, 1989, 22쪽; 이원보, 같은 책, 654~655쪽에서 재인용.

90) 이원보, 같은 책, 653~655쪽.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982년 3월 10일에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노동계 정화조치가 노동운동의 자율적 기능을 크게 저해시킨 요인임을 지적하고, 노동문제를 근로감독관에게 전담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율적 기능이 보호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정부가 구타나 고문과 같이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비윤리적·반도덕적인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기일전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셋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 억제와 노조간부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넷째,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자율적인 노조활동을 보호하여 노동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긍지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⁹¹⁾

그 후 노동조합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던 노동자들이 1984년 3월 27일에 ‘청계피복노조복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4월 8일에 명동대성당에서 모여 ‘청계피복노조복구대회’를 개최하여 비공식으로 활동한 343명의 ‘청계모임’ 회원과 조합원, 내빈 250여 명이 전 청계노동조합 사무장 민중덕을 위원장, 김영대를 사무장으로 선출하였다.

노동조합은 다음날 사무실을 열고 정식업무를 시작하였다. 3일 뒤인 11일에 경찰이 간부들을 연행·입건하고 사무실 집기를 들어내는 등 탄압하였으나, 노동자들이 결사적으로 항거하여 사무실을 되찾았다. 5월 1일에 2천여 명이 모여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합법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1981년 1월 해산명령은 정당한 근거도 합법적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해산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이 복구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하여 부당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복구된 뒤 4개월이 지나도록 당국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자, 가톨릭노동청년회가 1984년 5월 1일에 2천여 명이 모여 청계피복노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⁹²⁾

청계피복노동조합은 1984년 9월 19일 이후 네 차례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쟁취대회를 개최하였다. 1984년 9월 19일, 제1차 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노동자·학생·시민 등 2천여 명이 1시간 이상 청계천 고가도로와 동대문·혜화동·원남동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여 1980년 5월 이후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만큼 격렬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청계피복노동조합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등 재야단체

91) 기쁨과 희망사목연구소, 같은 책, 78~79쪽.

92) 부록 3에 전문 수록.

들이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고 ‘청계피복노동조합문제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⁹³⁾

6) 콘트롤데이터 사건

한국콘트롤데이터주식회사는 44개국에 6만여 종업원을 거느린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1967년에 종업원 40명, 자본금 32만 달러로 시작해 1968년 수출액 210만 달러, 1980년에 12배인 2,400만 달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한국콘트롤데이터노동조합은 1973년 12월 20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개신교 도시산업선교회의 지원으로 결성되어 3년 만에 다른 기업들과 같은 임금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다른 노조통합의 결성을 지원하기도 하고 10·26 이후에 금속노조민주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80년 8월에 지부장 이영순과 수석부지부장 유옥순 등 2명이 정부의 강압조치로 직권정지 당하고 9월에 해고되었으며, 1981년 봄에 보안사령부가 노동조합 간부인 박영선, 안중남을 협박하고 회유하였다. 1982년 4월 19일에 국방대학원 교수이자 승공연맹 간부인 홍지영이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사회선교협의회,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한명희를 미 문화원 방화사건 등과 관련된 불순세력으로 왜곡·비방하였다.

1982년 6월, 6명의 해고된 노조간부들을 복직시키려고 미국본사 부사장과 노조가 단체교섭을 하다 결렬되자 회의실에서 조합원들이 농성하였고, 새벽 2시에 남부경찰서 경찰들이 출동하여 53명의 간부와 노조원을 강제 연행하여 이 중 대다수는 훈방 조치하였으나, 6명의 노조간부들이 조사를 받다 이영순과 이태희가 전신마비 증세로 입원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한명희와 부위원장 김말희가 불구속 기소되었다.⁹⁴⁾

콘트롤데이터주식회사 노동조합 핵심구성원들이 구속수감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마비되자,

93) 이원보, 같은 책, 698~699쪽. 이후 1987년까지 청계피복노조는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법외노조로서 군부독재정권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산 징표로 존재하였다. 이 같은 복구투쟁은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해 온 결과였다. 또한 이 투쟁은 노학연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례로 평가되었다.

9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100~102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같은 책, 93쪽; 116쪽. 이후 콘트롤데이터주식회사는 노사교섭이 결렬될 때마다 경찰과 검찰이 공조하여 적극 개입한 것은 물론 노동부 본청과 관악지방사무소장도 빈번히 개입하고 협박하였다. 또한 중앙정보부가 금속연맹을 통하여 간접으로 압력행위를 지속하였는데, 당시 금속연맹 조직부차장 이진우가 콘트롤데이터 간부 이부임에게 증언한 바에 따르면, 금속연맹이 일주일마다 콘트롤데이터 노동조합에 대한 동향을 중앙정보부에 보고하였다.

가톨릭교회에 노사분규에 따른 해고노동자의 복직문제에 협조를 구하는 진정서를 1982년 6월 15일자로 제출하였다.⁹⁵⁾ 교회는 이를 검토하고 정부가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콘트롤데이터주식회사가 철수했을 경우에 국내외에 미칠 충격과 국익손실 등을 감안하여 해고노동자들을 조속히 복직시킴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1982년 7월 13일에 한국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구사대’라는 조직이 등장하였다. 퇴근시간에 술에 취한 40여 명의 남성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각목과 구둑발로 폭행하여 6명의 조합원과 위원장 직무대리가 입원하고 임신한 조합원이 유산되었다. 이 콘트롤데이터노동조합의 투쟁과 해산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횡포와 자국민의 이익보다 다국적기업의 요구에 충실했던 군사독재정권이 폭로되었다.⁹⁶⁾

1982년 7월 22일에 콘트롤데이터 여직원들이 서울대교구 경갑룡 주교 집무실에서 열흘 동안 농성을 벌임으로써 교회분위기를 새롭게 전환시켰다. 경갑룡 주교와 노동문제상담소 김말룡 소장,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가 계속 면담하여 평화롭게 매듭지었다. 즉, 농성노동자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없었으나, 차선의 해결책을 찾아 주었다. 콘트롤데이터사건 이후 경갑룡 주교가 노동사목위원회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서울대교구 공문서(PROTOCOL 83-38)를 보면 노동사목위원회를 재조직,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3년 12월부터 경갑룡 주교의 배려로 옛 주교관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⁹⁷⁾

7) 블랙리스트 철폐운동

1970년대부터 사직당국과 업주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가톨릭신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던 블랙리스트는 유신정권이 붕괴된 뒤에도 여전히 존속하였다. 이 블랙리스트에 걸린 노동자들은 범법자가 아닌데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가족·친지까지 괴롭혔으며,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국가기관과 업주들의 선전대로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적·반사회적 인물로 백안시하였다. 블랙리스트에 걸린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신

95) 부록 3에 전문 수록.

9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책, 100~102쪽;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같은 책, 93쪽; 116쪽. 콘트롤데이터주식회사의 노사분규의 시발과 진행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교회와 사회 단체들의 관심 표명은 기쁨과희망사목연구소, 같은 책, 157쪽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97) 도요안, 같은 글, 79쪽.

자노동자들 중 지명 수배되었다가 검거된 이들은 수감되어 고통을 받고, 나머지는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지 않기 위하여 오랫동안 숨어 지냈다. 이들과 가족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운 이들이 많았고, 수사기관에 쫓기지는 않아도 복직이나 재취업할 수 없어 실직자로 지내거나 전혀 새로운 일자리에 이름을 바꾼 다음 숨어 들어가 견습공으로 취업하기도 하였다.⁹⁸⁾

1980년 신군부의 정화조치 때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어서 이리 태창메리야스에서 해고된 여성노동자 6명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나,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시 해고당하자 업주에게 항의하고 노동부 이리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낸 다음 성당에서 단식 농성하며 복직과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였다. 1983년 1월에 삼익가구, 태평특수섬유, 신도실업 여성노동자 4명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해고되자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에 복직과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여 농성하였는데, 경찰은 유혈사태까지 초래하면서 이들을 연행 구속하였다.⁹⁹⁾

종교단체와 민권운동단체들이 ‘노동자생존권 박탈을 위한 명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1984년 1월 10일에 ‘민주노동자블랙리스트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시종 냉담하였다. 1984년 3월 9일,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속칭 블랙리스트란 무엇이며 지난번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답변에 나선 정한주 노동부장관이 “블랙리스트란 노사분규에 개입한 노동자들의 취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기피하는 데서 생긴 오해로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일단 부인하였다.¹⁰⁰⁾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계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회원들과 의식있는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로 묶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질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도대로 노동계를 순치(脣齒)시키고자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신군부 독재정권과 업주들, 노동귀족들의 작태를 고발하고 노동자들에게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1984년 4월에 원풍모방, 태창메리야스, 인천지역 해고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해고에 항의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기업의 상품을 사지 말자’는 유인물로 불매운동을 벌였다.¹⁰¹⁾

이렇게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워지자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던 노동부가 5월 26

98) 김봉순의 증언, 2007년 10월 28일자.

99) 이원보, 같은 책, 696~697쪽.

100) 중앙일보, 1984년 5월 26일.

101) 이에 대한 해명으로 노동부가 1983년 말 당시 25개 업체에서 블랙리스트 해당 노동자들이 일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681명이 해고되었는데, 그 가운데 60명 복직, 재취업 57명, 소재불명 428명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의 노동통제, 민중사, 1987, 51쪽; 이원보, 같은 책, 697쪽에서 재인용.

일에 “합법적이고 순수한 선교행위로서의 도산활동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단순히 도산계열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는 마땅히 복직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간접 시인하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노조활동을 했다는 경력이 밝혀지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¹⁰²⁾ 이후 블랙리스트철폐운동은 진정,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준법투쟁과 전단배포, 대중집회 등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블랙리스트철폐운동은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이 운동은 현장노동자들의 동정과 호응을 받지 못하였고, 부당해고에 대한 준법투쟁을 벌이며 같은 이유로 해고된 다른 해고노동자와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블랙리스트문제가 일반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문제로 일반화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탄압을 뚫고 제도개선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 있다.¹⁰³⁾

8) 대우어패럴사건과 구로노동자동맹파업

대우어패럴은 대우그룹의 의류봉제수출회사로 하루 평균 2,850원의 저임금, 월평균 80~100여 시간 잔업과 동상환자가 속출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관리직과 극심한 차별대우로 시달렸다. 노동자 150명이 1984년 6월 7일에 섬유노조연맹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열흘 만에 1,400여 명이 가입하였다. 업주가 납치·감금·협박·노조탈퇴강요·노조행사방해·열성조합원집단해고 등을 자행하고, 반대파를 사주하여 공갈·협박·구타 등을 계속하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고발장·진정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¹⁰⁴⁾

구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대우어패럴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가리봉전자·효성물산·선일섬유 등에게 공동위기의식을 일으켜 다음날 대우어패럴노동조합이 파업농성에 돌입하자, 다른 노동조합들도 동맹파업을 하였다.¹⁰⁵⁾ 세진전자·남성전기·롬코리아·삼성제약·청계

102) 중앙일보 1984년 5월 26일.

103) 이원보, 같은 책, 697~698쪽.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둘러싼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탄압과 이에 대하여 가톨릭교회가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내용은 기쁨과희망사목연구소, 같은 책, 494쪽 이하를 참조할 것: 필자 주.

104) 이원보, 같은 책, 709~710쪽.

105) “... 6월 22일에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과 간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우리 노조위원장을 통해 듣고 나는 ‘구속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대책을 세우자’며 안양 기독교 원로원에서 열린 노조교육에 참석해서 밤새 토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서

피복노조가 지지성명을 발표하거나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부흥사노조도 뒤따라 과업농성대열에 합류하였다. 6월 26일에 경인지방의 해고노동자들 중심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연행되었을 때 효성물산노동조합 회계감사 정복심(마리아)의 동생 정필순(테레사)이 노동조합간부가 아니었는데도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주모자로 취급돼 연행되는 등 다수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고초를 겪었다.¹⁰⁶⁾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김현배 지도신부와 북부연합회 주수옥 지도신부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9) 노동법 개정노력

신군부는 1980년 12월 31일에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을 개정하고 노사협의회법을 제정·공포하였으나, 1970년대 국가보위법과 유신체제의 규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노동운동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켰으므로¹⁰⁷⁾ 노동법 개정은 노동자들에게 긴급한 과제였다.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1984년 10월 12일에 노동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청계피복노동조합은 합법성쟁취대회를 노동법 개정운동과 관련하여 개최하고 가두시위를 하였다.¹⁰⁸⁾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1983년 말에 ‘노동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문제상담소

전 노동운동의 명예를 걸고 투쟁을 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탄압의 신호탄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우어 패럴 노조간부를 석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영원히 민주노조는 없어질 것이다란 결론을 내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정복심이 2007년 11월 26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명예회복 신청 사유서).

106) “... 회사는 이러한 저의 신앙적 순수함과 달리 저를 빨갱이라고 매도하면서 저를 해고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음해로 심지어는 동료들 중 일부는 저에게 진짜 빨갱이냐고 물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에는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회사가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그 배후로 저를 지목하고 저의 신앙생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빨갱이 짓으로 몰아 해고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회사는 저를 빨갱이로 몰아 해고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이번에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관리자들을 앞세워 노조탈퇴를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탈퇴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결하였습니다. 회사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는 섬유연맹 사무실과 한국노총에서 교육도 받고 조합활동을 해 나갔고, 회사의 탄압 속에서도 조합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해 갔습니다...”(정필순이 2007년 11월 26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명예회복 신청 사유서).

107) 이원보, 같은 책, 597~601쪽.

108) 같은 책, 699~700쪽.

김말룡 소장이 노동법 개정초안을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정의평화위원회가 1984년 사업의 일환으로 결의하고 5월까지 서명작업을 준비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청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교구 차원에서 서명작업을 계속하여 9월 말에 1단계 작업을 완료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¹⁰⁹⁾, 1984년 12월에 노동관계법에서 노동자의 기본생활권, 노동3권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2.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방향 재확인

1)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분열

가톨릭노동청년회는 20세기 청년들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¹¹⁰⁾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조직과 노동자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양성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카다인 추기경이 선종하기 전 88개국에 설립되어 회원이 4백만 명이나 되었다.¹¹¹⁾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하려는 교회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며, 다른 많은 노동자들까지 채택하였던 교육적인 방법론을 창안하였다.

그러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양적인 성장과 정체성의 혼란에 위기를 느꼈다. 나라마다 수준 차이에 따라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분열되었고, 결국 많은 나라의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생존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1975년 이래 몇 나라는 이미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으며, 1983년 스페인 마드리드세계총회(Madrid World Council)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사라진 나라들이 등장하였다. 1985년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 통계를 보면, 모든 전국단체들이 위기에 직면하였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심각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예전의 능력들을 상실한 채 자신의 중요성과 청년노동자들의 삶에 주었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국제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더 이

10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8월 30일자.

11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소장, ICYCW's Foundation-Relations between ICYCW and IYCW(가노청 국제협의회[CIJOC]의 기초-가노청국제협의회[CIJOC]와 국제가노청[JOCI])에서 발췌 요약. 이하 같음.

111) 마르케리프 페베즈 & 잭프 메르뜨 지음, 성염 역, 조셉 가르덴, 가톨릭출판사, 1990, 204쪽.

상 노동청년들의 대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었다.

2) 린츠선언

1975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개최된 린츠세계총회(Linz World Council)는 카다인 추기경이 선종한 뒤 첫 번째 열린 세계총회였다. 과거에 카다인 추기경의 카리스마는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청년들에게 카다인 추기경의 신념은 회칙이나 정관이 없어도 단체를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게 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체성에서 오직 한 가지 참조할 점은 1957년에 작성된 정관과 카다인 추기경 자신이었다.

이미 1969년, 레바논 베이루트세계총회(Beirut World Council)에서 정관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정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제집행총회, 대륙회의, 전국단체들 간의 토론과 회의들이 혼란스러웠다. 린츠세계총회를 위하여 준비된 모든 것들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전환점으로 실현되었다. 린츠의 기본원칙 선언은 네 가지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청년노동자운동, 활동운동, 교육운동, 운동의 방법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생활, 공동생활, 매일의 상황, 인간의 가치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기본목적은 청년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성이나 가치가 지니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고, 지역·전국·국제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셋째,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지역섹션은 회원과 청년노동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여섯 가지 특징들은 노동자이고, 청년이며, 그리스도인이고, 노동자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며, 국제적이고, 자율적이다.

즉, 노동계급 안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목적이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모든 이에게 보여 주고, 청년노동자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서와 대립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전국단체들은 이 문서내용의 동의여부를 투표하였다. 어떤 전국단체들은 이 문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모습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다는 데에 투표하였는데, 이 문서의 실행에 반대하는 전국단체들은 린츠문서를 찬성하지 않는 단체들이었다.

3) 바티칸과 관계악화

린츠세계총회 이후 국제팀과 많은 전국단체들 사이에 논쟁과 분쟁이 생겼다. 1979년에 국제회장이 국제팀을 해체하고, 1980년 세계총회는 준비위원회 회원들 사이의 논쟁으로 연기되었다. 어떤 국제대표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몇 년 동안 두 개의 국제조정위원회가 각자 세계총회를 준비하였다. 1981년에 열린 두 가지 중요한 회의는 벨기에의 메헬렌(Mechelen)에서 열린 임시세계총회와 콜롬비아의 보고타(Bogota)에서 열린 임시세계총회였다. 각각의 이 총회는 대략 절반 정도의 전국단체들이 함께 모였다.

1982년 4월의 임시국제조정위원회가 1983년 마드리드세계총회(Madrid World Council)를 준비하였다. 국제조직의 위상을 논의한 전국단체들은 그 국제조직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새로운 국제조직이 가톨릭노동청년회에 새로운 정신을 심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마드리드세계총회는 남·북아메리카와 아시아 대륙조정위원회와 몇몇 유럽의 전국단체들이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를 위하여 어떤 사상과 분석적 검토를 발전시키고 기준이 되는 조직구조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조작을 거듭하였다. 마드리드세계총회에 참석한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세계총회의 재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파괴하였다.

즉, 회의기간 동안 국제사무국은 몇 개의 전국단체와 투표권에 압력을 가하였다. 아프리카 전국대표들은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회의장을 이탈하였다. 대다수 전국단체들이 다시 따로 만났고, 소수의 전국단체들은 그 결정에 전혀 개입할 기회가 없었다. 세계총회는 단지 대다수 전국단체들만 대표하는 국제팀을 선출하였다. 소수 전국단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새 국제팀은 진정한 대표가 아니었다. 국제팀은 소수 전국단체들의 모든 건의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마드리드총회를 둘러싸고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와 바티칸의 관계가 나빠졌다. 먼저 스페인가톨릭노동청년회가 두 개로 분열되어 바티칸과 스페인주교단이 경고하였는데도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는 마드리드세계총회를 강행하였다. 바티칸은 이 총회에서 선출된 국제지도신부의 임명을 거절하였고, 국제회장 후보자도 승인하지 않았다.¹¹²⁾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와

112) 교회의 활동과 바티칸의 관계는 세 가지 근본원칙이 지배한다. 첫째,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바티칸에 세 명의 선거 후보자의 이름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동반자(지도신부)를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전국단체들과 사무국이 제안한 정관개정안은 세계총회에서 투표하기 전에 바티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바티칸 사이의 이러한 위기상황이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CIJOC)가 탄생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새로운 조직을 위한 모색과 성찰

1985년, 소수였던 유럽단체들의 전략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일부로 남는 것이어서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와 유럽가톨릭노동청년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자 하였다. 정확한 논점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유럽의 전국단체들을 조정하였다. 하지만 제안이 거절당하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그들은 자신들의 현 상황을 성찰하고, 앞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들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상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전국단체들과 거듭 성찰하였다. 이 문서는 새로운 국제조직의 기초를 쓴 것으로, 결론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탈퇴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들은 국제조직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국제 차원에서 살 수 없었고, 새 조직 구조를 탄생시켰다.

이들이 이렇게 결정한 기초는 국제단체의 역할과 개념, 노동자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 노동대중의 특징 등에 대한 토론이었다. 먼저 국제단체의 역할과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수직구조 안에서 국제팀의 지도자들이 만든 분석을 일반회원들이 수행하고, 일반회원들의 활동계획까지 국제팀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준다는 점. 둘째, 한 자리에 모인 전국단체가 아니라, 전 세계 회원들이 모인 국제단체이었다는 점. 셋째, 그들의 소망은 전 세계에서 날로 성장하는 자본주의의 공격을 막아 줄 몇 가지 활동들이었는데, 자본주의가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특별한 국제조직을 통하여 투쟁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주요목표로 삼기 때문이었다.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국제단체가 되기를 원하였고, 모든 나라에서 분석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켰다는 점과 같은 것들을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을 원하였다. 첫째, 전국단체들이 속한 국제조직은 풍부와 특성, 어려움과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교육의 가치를 높이며,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이론적 정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각 전국단체들에게 경험을 고려하여 풍요와 활기를 주기 원하였다. 둘째, 국제단체를 원하였다. 방법과 계획에 충실하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발전·성장시키는 전국단체를 돕고,

노동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세우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데 활동이 필수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였다. 셋째,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가 전국단체들을 후원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였다.

노동자의 특징에 대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노동자들의 조직과 다른 노동운동들의 대안, 이 사회를 위한 계획과 분석으로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사회를 위한 계획을 개발할 책임이 없고, 그것은 노동조합과 정당의 것이며,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서 노동조합과 정당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었다. 인간과 관련된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가 인간기본권과, 가장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노동자단체를 세우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바로 노동운동과 해방운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정의와 존엄성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이러한 투쟁에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청년노동자들의 희망과 삶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신앙과 가치와 삶의 경험을 성찰하기를 원하였다.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가 인간생활의 가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제안하였으나, 회원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항상 실천 속에서 생활하였으나, 결코 그 활동이 선교적 혹은 신앙적인 정신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가 교회활동이고, 신앙 안에서 해방과 교육의 다양한 문화 안에서 구체화하여 청년노동자의 삶과 연결되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의 삶을 전해 주고 생활하고, 청년노동자들의 삶과 생활 안에서 예수의 현존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스도교적 행사와 기도와 나눔을 제공하고, 신앙의 깊은 내면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설문조사를 원하였다. 그러나 노동대중의 특징에 대하여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가 기존회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로 인하여 청년노동자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여지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당시 전국단체 대표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었다. 국제조직은 신뢰를 상실하였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사건 때문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1987년에 개최될 세계총회는 1986년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준비되었고,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세계총회를 준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5)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CIJOC) 발족

1986년 6월에 8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단체들¹¹³⁾이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CIJOC)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새로운 국제조직의 기본교재를 준비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만났다. 정관과 새로운 내부규정, 기본원칙선언이 논의되고, 이 회의를 대표하는 전국단체들이 투표하였는데, 임시사무국을 세워 다양하게 접촉하기로 정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여러 가지 전국단체, 국제가톨릭기구¹¹⁴⁾들이 선출한 새 공식조직과 국제사무국¹¹⁵⁾을 창설하고 세계총회¹¹⁶⁾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출범한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CIJOC)를 바티칸이 임시로 인정하였으며, 1987년 프라스카티세계총회(Frascati World Council)에서 국제동반자를 임명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 회장을 승인하고, 1989년 6월에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교회 공식기구가 되었다.¹¹⁷⁾

113) 이 회의에 참석한 8개의 전국단체들은 각기 다른 경로로 도착하였다. 벨기에(VKAJ, 플라망 언어를 쓰는 여성들의 운동)는 몇 년 동안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 몰타(YCW)는 유럽가톨릭노동청년회(YCWE)의 결정에 따라 지위가 회원국에서 옵서버로 바뀌었다. 이탈리아(GIOC), 프랑스(JOC&JOFC), 영국(YCW)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를 탈퇴하였다. 포르투갈(JOC)은 1986년 9월에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를 탈퇴하고, 스페인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회원국이 아니었다. 스페인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두 개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가 인정된 것이었고, 다른 또 하나의 스페인가톨릭노동청년회는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와 아무 접촉도 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몰타의 지위가 옵서버로 바뀐 것을 계기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새 국제조직을 출범하려고 서둘렀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신속하게 돌이켜볼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수년간 잠재되었다 린츠국제총회에서 비로소 현실로 나타났다.

114) International Catholic Organization(ICO). 활동단체와 봉사단체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교회조직.

115) International Secretariat. 팀(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전담 직원들)이 두 개의 세계총회 사이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하였다.

116) 다양한 전국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경험과 생각들을 서로 교환하는 국제적인 회의. 여기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루었다.

117)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와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CIJOC), 위원회 일을 하는 책임 있는 조정자,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가 택한 교회조직으로 일치위원회(Dialogue Commission)를 구성하여 분열에 대하여 토의한 뒤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988년 3월 모임과 1990년 5월 7일과 11일의 모임에 대한 보고서를 국제사무국이 만들었다. 1990년 11월,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열린 제2회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 세계총회에 참가한 전국단체들의 반응은 국제사무국이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와 대화할 수 있을지라도 우선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사이의 전국단체들끼리 교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2회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 세계총회와 1991년에 아틀레이드에서 열린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세계총회 이후 1993년 1월 9일에 파리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사무국 회원 3명,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 국제사무국 회원 3명 그리고 국제가톨릭기구(ICO)에서 온 2명의 중재자가 참석하였다. 1993년 9월 프랑스 낭트(Nantes)의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 제3회 세계총회에서 나이로비 세계총회의 두 개의 국제조직에 대하여 말하고, 각 전국단체들이 국제토론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하였다. 이 때 전국단체들 간의 연결, 1995년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의 남아프리카 세계총회에 대한 메시지, 제9회 국제

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에 준 영향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갈등은 1980년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분열양상과 함께 사회의 구조변혁을 우선시하며 당시 국내노동계를 이끌던 소위 운동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형편은 아니어서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이들의 주장에 일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편승하기도 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다른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¹¹⁸⁾



가톨릭노동청년회 세계총회 이후 두 국제조직 사이의 회의 등을 동의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 사무국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세계총회에 대표단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여 이 세계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 118) 도요안 신부가 벨기에의 『Belgium pro mundi vita』에서 노동자와 아시아교회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다음과 같이 잘못 지적된 점을 거론하였다. 즉, 첫째로 아시아가톨릭노동청년회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공장에 근무하는 한국수녀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셋째, 서울대신학교에서 사제 허락 없이 비공식으로 신학생연수회를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넷째, 한국교회 안에 센터 등이 노동자와 협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를 탈퇴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CIJOC)에 가입하였음을 1992년 9월 30일자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남자회장 김성진과 구요비 지도신부의 명의로 전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통보하였다.

1983년 아시아대륙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각 나라 사이의 교환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9~22일에 한국과 일본이 가톨릭노동청년회 교환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런 활동은 각국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국제조직에 참여하는 의식과 세계의 모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 사이의 일체감을 맛보며, 다른 나라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회장 단과 지도신부들이 한국과 일본의 각 교구를 방문하고 노동활동의 다른 조직과 대화하여 젊은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많은 외국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사들의 방한으로 국제본부의 상황과 각국 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발전을 도와주었다.¹¹⁹⁾

3.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1980년대는 정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과 강경일변도의 노동정책, 이에 편승한 업주의 노동조합과 노동자권익에 무관심한 태도, 노동자들의 타협가능성을 배제한 투쟁일변도의 대응자세 때문에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더구나 사회변혁을 이끌던 지식인들이 노동현장에서 노동문제를 마르크시즘을 비롯한 이념으로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과 노동현장 그리고 사회를 복음화하려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왜곡된 환경에서도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근본정신을 노동현장에 구현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복음화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많았지만, 혼란한 시류에 편승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활동방향에 혼란을 겪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도 있었다. 서울 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러한 사회환경과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복음적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제반문제를 토론한 뒤에 노동사목의 실천적인 방향을 정하였다.¹²⁰⁾

119)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238쪽.

120) 자신과 가정·이웃 등 인간 자체를 변혁시키는 노동자의 영성을 배려하며, 노동과 신앙을 일치시켜 주는 단체라고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투쟁이나 노동운동단체가 아닌 우정중심단체인데 현실의 어려움, 즉 임금·인권 문제 때문에 투쟁하지만, 회합을 통하여 서로 어려움을 나누며 용기를 얻었다. 사회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으므로 노동사목 방향을 신학교 교육에 맞추어 인재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긴 안목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로 하였다. 서

즉, 교회는 복음과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노동현장은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닌 바로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동반자로 이들에 협력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드러나는 교회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1980년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구체적인 노동사목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노동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사제와 수도자들은 이들의 동반자로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¹²¹⁾ 이러한 바탕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사목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대교구와 노동계에서 교회활동을 연결하며 조정하는 것으로 노동계 안의 가톨릭 사도직 확장과 평신도 실무자 양성,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실 운영, 교구 내 노동사목에 관련된 단체들의 예산을 조정한다. 둘째, 노동사목위원회 위원들과 위원들이 속한 조직 내의 회원들이 하는 활동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셋째, 각 위원들이 속한 조직의 활동을 복음적 차원에서 강화시킨다. 넷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각종 사회회칙을 연구하고, 특별히 최근 교황이 발표한 회칙들의 가르침에 따라 연구·교육하고 양성하여 단체들이 그 정신에 일치하도록 한다. 다섯째, 노동계 안에 활동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와 함께 노동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노동계의 변화와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교회의 응답 가능성 여부와 적절한 시기, 대응책을 식별한다 등이었다.¹²²⁾

4. 기본활동과 양성훈련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1984년부터 정기회의 시간에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의 활동을 보고하게 하여 노동현장을 파악하고 적절한 사목방침을 세웠다.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잔업이나 특근 등으로 섹션이나 팀 회합에 정기로 참석하기 어려운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많았으나, 투사훈련회, 예비회원교육, 섹션회장단 연구모임, 회원모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3년 12월 16일자.

12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1983년 12월 16일자 회의록.

122) 도요안, 같은 글, 82~83쪽.

임 등 양성프로그램, 심신단련과 친목을 도모하는 하계수련회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피정 등을 정기로 시행하였다.¹²³⁾



하계수련회(1986, 목동성당색션)

123) 1980년대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와 북부연합회 회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당시 위원장 교체와 선종, 위원장 공동대리, 단독위원장 체제 등 내부적인 문제와 사정기관의 감시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문서를 파기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만 1984년부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기회의 시간에 남부와 북부연합회 회원들의 활동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발표하였으므로 일부가 남아 있다. 필자 주. 1980년대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교구별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은 생활보고의 중요성과 팀조직 지도방법, 수첩사용의 중요성, 사회 안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할,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목적·방법·연구와 카다인 정신연구, 지도자의 기능·역할·자질연구, 회합과 활동에 임하는 자세 등이고, 이밖에도 예비회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235쪽.

✻ 제5절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성장

1.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체제정비

1) 팀 확장

그동안 침체되었던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의 활약으로 1981년에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문경수(베드로)가 직장을 따라 신탄진으로 이사하여 8쌍의 부부팀을 만들어 1981년 1월 11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인천교구는 가톨릭노동장년회 초대회장이었던 이진엽을 중심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출신들이 모여 다시 하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팀을 구성하기보다 인천과 안양 등지의 기존조직을 찾기로 하였다. 지역교류뿐 아니라 팀 위주로 활동하기로 하여 1982년 7월 11일에 인천교구 화수동팀이 발족되고, 1982년 10월 10일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인천교구의 인준을 받아 연합회를 발족하였다.

2) 팀 회합 순서와 회칙

1982년 9월 당시 가톨릭노동장년회는 매월 각각 팀회합을 통해 생활반성과 복음을 나누고, 3개월에 한 번 전체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회, 일반회, 피정 등을 보고하였다. 매월 임원과 팀 회장의 월례회를 개최하고, 매월 첫째 화요일 미사를 봉헌하며, 격월로 지도신부 모임을 개최하였다. 1982년 11월 21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공식이었던 회장을 부회장인 김성진이 대행하고 회칙을 통과시켰다¹²⁴⁾.

1983년 5월 16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 교재인 훈련지를 발간하였다. 이 훈련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것으로 참된 노동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팀 회합 때 문제해결의 보조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어 1985년 6월 30일의 임원회의에서 홍보용 회보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124) 제2조 목적, 제3조 활동, 제4조 비정치성을 중심으로 수록하였고 나머지는 각조의 명칭만 담았다.

2. 본격적인 활동전개

1) 피정

1980년 3월 9일에 도림동성당에서 23명이 ‘우리 생활에 대한 해방의 표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피정하였는데, 오영진 신부가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하였으며,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의 4개년 계획대로 노동계 내부로부터 신앙을 실현하기로 다짐하였다. 이러한 사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조직인 회원들이 액션에 투신하고 다른 동료와 함께 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노동계에 속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노동자로서 스스로 인정하여 주며,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여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생활을 좀더 낮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생활, 직장 생활 등 사생활에서 문제점을 일일이 드러내고 분석하여 필요한 교육으로 해결책을 강구한다. 둘째, 신자 입장에서 노동자생활을 신앙의 관점으로 판단하여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한다. 노동자들이 매일 겪는 일들로부터 표징을 분석하고 발견하여야 한다. 셋째, 가톨릭노동장년회는 노동조합·소비조합·협동조합도 아니고, 심신단체나 봉사단체도 아니다.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이란 형편에 따라 이웃과 함께 혹은 직장동료와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방시키는 행동을 촉진하도록 투신해야 한다.

1981년 3월 29일에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24명이 ‘어둠에서 빛으로’(요한 9,1-41)라는 주제로 피정하였다. 홍세안 신부가 지도하였으며, 강론을 듣고 피정주제에 따라 분과별로 토론하고 이를 종합 발표하였다. 홍세안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신비’를 멀리 계셨던 하느님, 사막에서 그들을 이끄시던 하느님께서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심으로써 당신 백성과 새 관계를 맺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활까지 도전하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느님의 강생’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강조하였다.

1984년 4월 1일에 도림동성당에서 16명이 오영진 신부의 지도로 피정하였다. 복음 봉독 후 각자 생활반성 시간에 자녀 교육문제, 이웃과 문제, 직장문제 등을 다루었다. 십자가의 길은 각 처의 기도를 미리 배정된 사람이 준비한 자유기도로 하였고, 주제강의는 주일복음 중심의

강의와 대화로 요한복음 9장 1~41 절을 묵상하였다. ‘밀알 하나가’라는 슬라이드를 감상하고 공동참회와 개별고백 이후 과견미사로 마감하였다.

1985년 3월 24일에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17명이 ‘우리들의 고통과 주님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피정하였는데, 홍세안 신부와 임경명 신부가 지도하였다. 개인소개에 이어 말씀의 전례, 분임토의, 슬라이드 상영(오늘에 있어서 예수님 죽음), 고해성사와 미사 등이 이어졌다. 분과토의는 4팀으로 나누어 ‘고통’을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가정고통, 직장고통, 교회고통 등과 노동자들의 제일 큰 고통,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등으로 구분하여 묵상하고 결과를 나누었다.

1985년 12월 1일에 오영진 신부가 지도하는 ‘신약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피정을 하였다. 프라도사제회를 창설한 슈브리에 신부가 지은 기도를 시작으로 집회서 35장 17~18절, 루카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비유, 시편 123장 3~4절 등 가난에 대한 성서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1986년 3월 2일에 영보수녀원에서 ‘노동자의 신앙생활과 노동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피정을 거행하였다. 당시 가톨릭노동장년회는 실업자문제가 심각하였는데, 특히 건축계통에서 일하는 회원들이 많았고 대부분 실직상태였다.

2) 일반회

1980년 4월 13일에 일반회를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이용유 신부 지도로 개최하였다.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제는 ‘1.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2.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태재(삼손) 회장이 가톨릭노동장년회를 소개하였으며, 회원과 일반회원을 골고루 섞어 5개 분과로 배정하였다. 발표는 5개 분과 전부 포스터를 그려 붙이고 보충설명으로 진행하였다.

이 날의 일반회는 도요안 신부의 다음과 같은 강의로 마무리되었다. “의식화란 흥분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생활에서 얻는 것도 아니며 수많은 동료들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심은 노동현장부터 올바른 인식으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맺어 협조하여 하나로 뭉쳐야 하고 계속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어 5월 17일에 살레시오수도원에서 일반회를 겸한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가족을 동반하여 친목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배양하여 모두 한가족처럼 즐겁게 보내면서 참된 휴식과 사랑의 나눔을 배웠다.



야유회(1983년)

3) 수련회

1980년 8월 16~17일에 과천 성모영보수녀원에서 21명이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하기수련회를 개최하였다. 그리스도인 노동자활동으로서 가톨릭노동장년회를 완전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사명감을 가질 때 참된 활동이 된다는 이용유 신부의 강의를 통하여 가톨릭노동장년회의 본질을 확인하였다.

4) 총회

1980년 11월 30일에 도림동성당 유치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개최기도와 인사 소개에 이어 각 팀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신규가입자는 각 팀으로 보내 보강하기로 하였으나, 가입희망자들 가운데 노동으로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시키지 않기로 하고, 회원이 확보되는 대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지역확장은 2월에 인천과 안양을 방문하기로 하였고, 부평에서 6부부 정도가 회합하며, 북부는 10부부 정도가 회합을 추진하고, 신탄진 지역은 8부부 정도가 회합하였다. 지도신부는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신부 중 가톨릭노동장년회를 지도하고자 하는 신부를 스스로 찾기로 하였다.

3. 외국회원들과 연대, 교류

1) 일본가톨릭노동장년회와 대화



아시아교류

1980년에 이르러 외국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였다. 4월 20일에 구로3동성당에서 일본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인 에드워드 신부와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이 대화하였으며, 통역은 메리놀수녀회 안 수녀와 마이라(도림동성당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가 수고하였다.

이태재 회장이 비록 4개 팀으로 늘었지만, 아직 팀을 결정하지 못한 잠재적 회원이 여럿이고 인천, 안양 등의 회원들과 아직 조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능력과 성의부족을 반성하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에드워드 신부가 아시아 지역은 32개 나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있는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일본·홍콩·타이완 등이 한 그룹을 이루지만, 타이완·홍콩에 아직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없으므로 자연히 지역대화는 한일교류임을 강조하였다. 일

본은 8월 1~3일에 있을 일본전국대회에 한국회원 대표를 초청하여 집행위원으로 김혜경과 다른 1명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2) 국제총회 참가와 세미나

1981년 연구·묵상·활동 대상으로 노동계의 부름과 응답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토론하였다. 스위스는 자동기계 설치 등의 이유 때문에 폐업과 실업자문제가 심각하며, 이민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저지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 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을 막지 말자는 운동이 생겼다. 말레이시아는 임금인상 문제로 항공사 직원들이 데모하였는데, 각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취항거부로 해결되었다. 스리랑카는 9,000여 명의 어부들이 장비도 없이 부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사회주의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여 이중고를 겪었다. 주교회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이집트는 교회를 억압하지만 암암리에 교회예절을 거행하며, 시차별 출근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부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3) 제3차 한일교류

1981년 8월 2~5일에 한남동 끈벚뽕알 성 프란치스코수도원에서 제3차 한일교류를 개최하였다.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 12명, 지도신부 1명과 일본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 10명, 지도신부 2명이 참석하였으며, 옵서버로 홍콩에서 2명, 지도신부 1명, 타이완에서 지도수녀 1명, 스리랑카에서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집행위원 1명, 통역 6명, 기타 3명 등 총 39명이 참석하였다.

8월 2일 오전에 한국이 주례하는 개회미사에 이어 지역별로 자기 팀을 소개하였다. 오후에 3그룹으로 나누어 공단지역은 구로동, 노동자 거주지역은 난곡, 상가지역은 청계천을 방문하였다. 저녁에 이태재가 한국노동계 역사, 안드레아가 한국노동계의 현재상황, 다카하시 노부오가 일본노동계의 역사를 각각 소개하였다.

8월 3일에 일본이 주례하는 말씀의 전례 이후 옵서버 나라들의 노동계 상황을 보고하였다. 사비나가 홍콩, 엠마누엘이 스리랑카, 미린 수녀가 타이완의 노동계 상황을 보고하고, 그룹별 생활보고를 속개하였다. A그룹은 한국 5명, 일본 5명, 옵서버로 참가한 나라에서 온 이들, B그룹은 한국 7명, 일본 6명으로 구성되었다.

8월 4일에 말씀의 전례 이후 그룹별 생활(활동)보고를 하고, 나라별로 그룹도의를 한 뒤 발



제3차 한일교류(곤베틀알 성 프란치스코회관)

표하였다. 8월 5일에 옵서버 국가들의 가톨릭노동장년회 상황보고, 제2차 한일교류(1976년 10월) 이후 양국의 가톨릭노동장년회의 발자취와 현황, 슬라이드 상영과 그룹토의에 대한 종합발표를 하였다. 생활보고와 분석으로 서로의 공통점 발견, 직면한 문제점 발견, 공통문제 해결에서 협력방법 모색, 상호발견, 평가한 것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이 모든 의견에 대한 종합결론으로, 노동자의 현실이 어렵고 활동의 공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라는 틀려도 가톨릭노동장년회는 하나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일본은 제4차 교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전체교류를 2년마다 1회로 제안하며, 연간 한 두 번 소수 위원들을 교환하고, 정보를 충실하게 교환하기 위하여 개인뉴스·편지·기관지·긴급뉴스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전체 교류를 4년마다 1회로 제안하고, 2년마다 소위원 2명을 교환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어 전체평가와 폐회미사로 끝냈다.

4)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MMTC) 간부 방한

1981년 12월 정기총회의 결정에 의해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 총무 베르네(Werner)를 초청하여 1982년 8월 10~20일에 서울, 인천, 안양, 마산, 진해, 신탄진지역 회원들과 대화하였다.

1984년 9월 30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 아시아지역집행위원 주니코(일본)가 구로1동성당을 방문하였다. 주니코는 도쿄시내 탁아소교사이며, 남편은 전기기술자로 노동조합 간부였다. 주니코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11년 동안 하였으며, 12년 전부터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1983년 국제본부 모임에 참석하여 아시아집행위원에 선출되었으며, 한국과 교류하기 위하여 방한하였다.

4. 가톨릭노동장년회 홍보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이 땅에 도입된 1958년부터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가톨릭노동장년회는 도입시기도 늦었고, 침체된 기간이 많아 계속 발전하지 못하여 널리 알려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회원들의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교회일각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도 가톨릭노동장년회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가톨릭대학보에 팀 회합에서 기자와 회장, 회원, 지도신부가 대담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¹²⁵⁾

125) 1987년 가톨릭대학 취재반은 홍세안 지도신부와 박근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노동장년회 소속의 민들레팀 회합에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 제6절 노동문제상담소 활동

노동문제상담소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으며, 국제적인 경기불황은 이를 장기화하였다. 종래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과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은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초래하였고, 외자의 과다대출로 경제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또한 농촌의 개발부진에 따른 도시의 비대화는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초래하면서 도시의 노동력과잉으로 실업률이 급증했다. 조악한 노동력을 가진 잠재실업군이 독점적 대기업하부에 산재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다국적기업의 단순노동에 취업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였다.

지속적인 불황으로 취업은 점차 어렵고, 취업노동자일지라도 임금상승이 도시의 소비자 물가상승에 못 미쳤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의 이익보다 기업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크게 달라졌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은 산업별체제에서 사업장단위로 바뀌었으며, 정화조치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켰다.¹²⁶⁾ 이렇게 유신시대보다 더욱 나빠진 노동환경에서 노동문제상담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였는데, 노동문제 상담과 교육, 노동사목 관계기관과 협조 등의 활동은 주위여건에 영향을 받아 적절히 증감했으나, 상담을 주 업무로 점차 활동범위를 넓혔다.

1. 상담활동

노동자의 신상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다루었지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민법 등을 주로 상담하였다. 상담대상자는 성별이나 연령별로 특별히 통계를 낸 것

126) 노동관계법의 개편골자는 노동조합의 산별체제에서 사업장 단위노조로 개편하는 것 외에 노동조합활동에 제3자 개입금지를 첨가한 점과 노사협의회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고쳐 근로시간을 주, 월 단위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인식에 최선의 방책으로 제시된 '자율적 노동운동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향상'으로 함축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노사관계에 의한 노사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워져 정부의 조정 내지 간섭이 강화되고 노동문제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못한 채 잠재되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비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나빠졌다: 필자 주.

은 없으나 20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소기업 노동자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이 많은 노동문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자각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상담결과에 대한 통계 역시 수집하기 곤란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가 상담하면서 사안의 요점이 정리되고 상담과정에서 발견된 해결방안대로 처리되었다.

매일 상담실적을 일지에 기록하였으나,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나 본인이름을 밝히지 않고, 밝히더라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영세소기업은 업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가 특정문제로 깊은 시련을 겪으며, 어떤 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이 수호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하고 노동자의 자각을 통하여 권익이 확인된 뒤 법률이나 관습 혹은 특별한 방법으로 권익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긴요하였다.

상담과정은 상담자가 내방노동자들의 문제를 듣고 사안의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의문점은 반복해서 대화하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문제에서 나타나는 부당함이나 권익을 명확히 하여 주었다. 정확하게 확인한 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법률을 적용하고 관계부처나 기관에서 이를 처리케 하는 방안을 찾는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다. 최종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신념을 가지면 일차상담이 끝났다.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상담이 끝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하여 기본상담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문제가 특별히 복잡한 경우 단계적으로 상담하였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상담은 계속되며 특별한 경우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¹²⁷⁾

1979년 12월 1일부터 1984년 11월 30일까지 상담내용을 분석하면¹²⁸⁾, 노동법상담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노동자들에게 법률과 관계된 문제는 가장 절실하면서도 전문분야이므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 주고, 1980년 12월 31일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 크게 혼란을 겪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재해¹²⁹⁾·채불임금·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들이

127)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내방노동자에게 일체의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에는 직업의 종류·노동조건·성별·연령 등에 의한 편견(偏見)이나 왜곡심리(歪曲心理)가 작용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종교적인 면도 물론이었다. 상담과정에서 얻은 비밀이나 특정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켰다. 상담에는 오직 노동자를 위한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뿐이었다. 필자 주.

128) 노동상담소의 회계 연도는 전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이므로 관련통계도 이를 따랐다. 필자 주.

129) 산업재해에서 연소노동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16~17세)의 사고원인은 이들을 고용할 때 기술이 미숙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퇴직금·노사관계·부당해고¹³⁰⁾·취업문제·제수당 등이 뒤를 이었다.¹³¹⁾

1982 회계 연도는 노동법상담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년도는 산업재해가 두 번째이었으나, 이 해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두 번째, 체불임금이 세 번째였다. 부당해고·기타·산업재해·제수당·퇴직금 등이 뒤를 이었고, 유급휴가·취업문제·선원관계 등은 낮은 비율이었다. 1983 회계 연도는 앞선 3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이었던 노동법상담 대신 체불임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산업재해·기타·노동법상담 등이 그 뒤를 잇고, 퇴직금과 제수당이 같은 비율, 부당노동행위·유급휴가·취업문제 등이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선원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984 회계 연도는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당해고와 체불임금이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노동법상담·기타·제수당·퇴직금·부당노동행위·유급휴가·취업문제 등이었다.

이처럼 전체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상담내용 중 부당해고·산업재해·제수당·노동법상담 등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퇴직금은 1982 회계 연도에 조금 줄었다가 1983 회계 연도에 증가하여 1984 회계 연도에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체불임금은 계속 증가하다가 1984 회계 연도에 조금 감소하였다. 취업문제는 1982 회계 연도에 줄었다가 1983년부터 증가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는 1982 회계 연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983 회계 연도에 급감 그리고 1984 회계 연도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노사문제는 유급휴가와 선원관계로 분류하였는데, 유급휴가는 증감의 부침이 심하고, 선원관계는 1982 회계 연도에만 통계자료로 남았

한 상태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해외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현지에 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업체마다 인색하게 처리해 주고(국내근로기준법에 준하게 명시되었으나 무시해 버림) 피해자들도 보험회사와 취업회사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완전보상, 일부보상) 모르는 상태이므로 피해를 더 받았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6월 21일자.

- 130) 부당해고는 도산되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대기업에서도 집단해고를 시키는 일이 있다. 도산되는 업체에서 체불임금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 업체들은 은행에 저당되어 있는 상태가 많다. 기업주나 노동자의 의식수준이 무지인 상태가 많은데, 상담소의 목적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안에 앞서서 현재의 노동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보호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행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자체도 자기 안에서 세력다툼, 어용 등으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노조정상화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84년 6월 21일자.
- 131) 내방 노동자들의 상담내용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뚜렷이 한 가지 사안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를 당한 동기에서 퇴직금이나 휴가 혹은 제수당의 문제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수가 많으며, 처리부분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지 해고수당을 받는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되어야 한다. 즉, 드러난 문제는 원인으로서 문제와 사안처리방안으로 문제가 연결된 셈이다. 따라서 이를 최종적으로 통계에 산입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분류의 부정확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상담소를 찾는 노동자의 양적인 증감과 대체로의 문제성향을 알아보는 데 유효한 것이다. 필자 주.

다. 기타는 1980 회계 연도와 1981 회계 연도만 적을 뿐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5년 동안 상담내용 중 노동법상담·산업재해·체불임금·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다.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체불임금·노동법상담·기타·부당해고·퇴직금·휴가 및 수당·부당노동행위·취업문제 순으로 이어졌다.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의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체불임금·노동법상담·기타·퇴직금·휴가 및 수당·부당노동행위·취업문제 순이었다. 1985년 3월부터는 상담건수뿐 아니라 결과 처리, 즉 ‘임금 혹은 보상’과 ‘기결율’까지 매월 통계로 작성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5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동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노동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노동법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비용보다 다른 문제가 우선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산재보상은 보상액이 가장 많고, 기결비율도 매우 높았다. 당시 노동환경이 아직도 열악하여 산재환자들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문제상담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휴가 및 수당문제,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처리된 임금 혹은 보상액 그리고 기결비율에서 다음을 차지했다. 이 문제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이전처럼 여전히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 항목 모두 기결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업주들의 노동자의 기본권리 충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큰 이유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이 다른 문제들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존속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업주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취업문제가 11건이나 의뢰되었는데도 기결비율이 0%인 것은 상담사례가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상담소가 취업문제까지 확산시키는 역부족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86 회계 연도는 전년처럼 상담건수가 많고 기결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노동법과 산재문제이었다. 상담건수에서 전년과 달리 부당해고가 휴가 및 수당문제,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제치고 세 번째이었으나, 기결비율과 처리된 임금 혹은 보상액은 상대적으로 낮고 적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상담건수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결비율이 반 이상이고, 처리된 임금 혹은 보상액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데 반하여 기결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취업문제가 4건 늘어났지만, 기결비율이 0%에서 28%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¹³²⁾

1986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상담건수가 가장 많고 기결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동법,

상담건수와 기결비율이 두 번째, 보상액이 가장 많은 것은 산재보상이었다. 이 해에 들어와 부당해고·퇴직금·체불임금·부당노동행위·휴가 및 수당 등의 기결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¹³³⁾

2. 교육

상담소의 교육활동은 주 사업인 상담활동과 더불어 주요한 업무이었다. 교육활동뿐 아니라, 상담활동을 보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상담에 응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최초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권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올바른 상담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근본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노동문제의 다양함과 그 구조적 복잡성은 노동자로 하여금 쉽게 자신의 문제를 간과(看過)하게 만들고, 의외로 자신의 권익을 가볍게 취급하게 해 버렸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자신의 권익에 대한 기본이해는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교육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해부터 취업, 직장생활, 노동관계법 등 노동문제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자신이 최소한 자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다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담소의 설립 초기 수개월간 계속되었다. 노동문제상담소의 교육은 주로 노동법과 노동문제로 상담소가 필요한 교육 외에도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돈보스꼬청소년센터 등 노동사목 기관의 요청에 따라 행하기도 하였다.¹³⁴⁾ 노동문제상담소의 교육활동은 매일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상담활동과는 달리 필요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간도 정기적이지 않았고, 인원도 일정치 않았다.

132) 상담소의 역할 가운데 취업중개 기능이 향상되었거나, 사회의 취업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상담사례가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필자 주.

133) 당시의 상담자료들이 없어 이에 대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6·29민주화선언 직전의 혼란한 사회, 특히 노동계의 난맥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필자 주.

134) 노동문제상담소의 교육통계 자료는 이 글에서 제시된 것만 남아 있다: 필자 주.

3. 노동사목 관계기관과 협조

교회의 노동사목 관계기관의 활동과 상담소 활동은 밀접한 관계로 노동사목 관계기관의 의뢰에 응하여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자문에 응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필요와 요청으로 결정되었다. 기타 상담소의 목적에 합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회의 활동에 상담소는 긍정적으로 응하였다.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운동이 침체상태이어서 노동자들이 권익을 찾아지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노동부의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노동감독관마다 법을 다르게 해설하고,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자기들의 권리를 찾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동문제상담소가 자체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정부기관 또는 교회관련 병원(산재관계)이나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4. 구로1동성당 노동문제상담실

1) 상담실 개소

명동노동문제상담소의 상담활동과 교육활동 등이 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노동자들의 상담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대개 연장근로로 인한 과중한 업무시간과 이에 따른 심신의 피로, 그리고 자신의 일터와 명동노동문제상담소가 멀어 현실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프라도사제회가 1987년 6월 1일에 구로1동성당(현재 구로본동성당)에 노동문제상담실을 열고,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이무술에게 맡겼다.¹³⁵⁾ 이무술은 두 달 동안 상담실 업무를 처리한 뒤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요청하였다. 첫째, 노동상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월·화·수요일만 근무하지 말고 목·금·토요일도 근무해야 한다. 둘째, 상담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담원을 증원해야 한다. 셋째, 상담실 업무를 위한 환풍기·타자기·도서 등을 지원해야 한다 등이었다.¹³⁶⁾

135) 구요비 신부의 증언, 2007년 11월 16일자.

1987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노동문제 관한 상담실적은 총 105건, 상담 연인원 155명, 상담을 통하여 해결된 임금과 보상금액은 5,200,000원이었다.¹³⁷⁾ 주요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는 산재환자들의 배상액이 적으면,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토로하였다.¹³⁸⁾

2) 노동현황 분석

구로1동성당 노동문제상담실은 당시 노동계 동향과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파악·분석하였다. 첫째, 상담소를 찾는 이들은 신자들이거나 신자들의 소개로 온 이들인데, 상담실이 성당 안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다수가 남자인 것을 볼 때 당시 남자노동자보다 여자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미약하였다.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이들이 있었는데, 조금만 뒷받침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많았다. 즉, 이들에게 절차방법만 교육하면 되는 경우로 시간 때문에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토로되었다.

둘째, 권리회복은 복잡하였다. 주로 노동조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업주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대응하는데, 끈기있게 싸워 권리를 쟁취하는 기술, 인내, 지혜, 관계지식 등이 대단히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를 갖추기보다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그룹형태의 집중교육이 요청되었다.

셋째, 여러 곳에서 노사문제가 대두되자 보도매체들이 해결책을 촉구하여 해결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당시 고조되던 민주화 열기를 이용한 보도매체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었다. 문제의 발단시점에서 사업체에 접근하여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가 마지막 어려움에 당면하였을 때 외면한 예를 들어 교회의 역할은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실제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의식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계속 만나 교육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였다.

넷째,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를 도와야 한다면 우선 노동3권이 전면 보장되고,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어용노조가 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였다. 노동자들 본인이 어떠한 조건에서 일하는지 아는 이가 드물고, 연장근로와 야근한 노동자들이 안 한 노동자들과 같은 급료를 받는 예가 흔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조합법 등

136) 구로1동성당 노동문제상담실, 1987년 8월 5일자 보고서.

137) 같은 보고서.

138) 같은 보고서.

노동자들에게 유익한 법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민주노조라고 자칭하는 노동조합도 단체협약을 본 노동자들이 드물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하는 취업규칙 역시 아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다.

다섯째, 노동계에서 작업환경·휴가·상여금·안전·보건·산업재해원인 등을 제대로 분석하는 이들이 없었다. 노동문제상담실이 모든 문제를 검토·분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미래에는 감당할 문제로 계획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여러 곳에서 노동문제상담소를 설치·운영하였지만, 연대하더라도 사적인 교분관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지역별로 연대할 수 있다면,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노동자가 굳이 다른 지역 노동문제상담소를 찾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실무자가 하여야 할 문제들이지만, 교회가 뒷받침하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¹³⁹⁾

139) 같은 보고서.

✻ 제7절 요약과 평가

1. 요약

노동은 인간의 실존에서 근원적인 영역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이웃과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고,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신군부의 독재정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극도로 탄압하는 노동법을 시행하고, 노동자의 활동은 집회법 또한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언론기본법을 통하여 관제언론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은 경제성장우선, 저임금노동정책으로 일관되어 노동자의 50%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기업들은 생산과정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하도급이나 하청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회피함으로써 단위기업이나 지역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워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이와 같이 노동의 내외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개선하도록 조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전체사회의 공동선의 목표로서 노동사목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81년 9월 14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로운 사태』 반포 90주년을 즈음하여 반포한 회칙 『노동하는 인간』이다. 즉,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 회칙을 연구하여 1984년 12월 26일부터 ‘교서문헌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들은 교서의 내용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회칙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교회의 가르침을 토대로 노동자나 신자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주교단은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라는 이름의 교서를 1985년 7월 5일에 발표하였다. 요컨대 이 사목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해의 만연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 사치와 낭비풍조를 조장하여 빈부격차와 인간소외의 가속화를 언급하면서 특히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희생되고,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복음에 비추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노동사목위원회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존권 확보와 복음화를 위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 등 평신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사례발표와 팀 회합을 유지하였다.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권리구제에 관심이 높았지만, 노동자 사도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회헌

장』이나 『평신도교령』에 대한 교육에는 선호도가 낮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평신도들은 가장 잔혹한 노동통제의 ‘체찍’인 용공분자로 처벌하거나 구사대와 같은 ‘당근’의 상반된 노동정책에서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터, 서통, 대우어패럴 등 노조활동을 통해서 노동법을 합법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회원들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정치조직과 노동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되었다. 더구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양적 성장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에 따른 내적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도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JOCI)와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CIJOC) 정도의 분열은 아니더라도 회원 일부가 교회의 가르침에서 멀어졌다. 즉,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의 분열과 함께 사회구조 변혁을 우선시하며 당시 국내 노동계를 주도하던 소위 운동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이들의 주장에 일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편승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내부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2. 평가

1980년대 교회는 이전까지 노동자들에게 산발적인 관심을 가졌을 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 인권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존권의 확보와 복음화를 위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등 평신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노동사목위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영성과 재정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지원하였다.

특히, 노동사목위원회는 가톨릭노동장년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과 기본적으로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평신도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전력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기본적으로 복음화와 영성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 생활반성과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외국회원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국제총회에 적극 참가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물론 가톨릭노동장년회의 성장과 발전은 80년대 한국교회의 노동사목의 전형인 동시에 본당 차원의 노동사목 활성화 위한 내재적 한계를 암시하였다. 즉,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영성에 대한 질적 측면보다는 노동현장의 이해라는 양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끝으로 노동사목위원회는 1980년대의 노동악법과 나빠진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자각과 실질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노동문제상담소의 확장을 통해서 교회가 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였다. 유신 이래 법치주의가 보장되지 못한 독재정권에서 노동문제를 법적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주로부터 은혜 혹은 민주화운동으로 파악하는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회가 노동문제상담소를 운영함으로써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계에 매우 신선한 충격이 되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많은 노동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노동문제상담소를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